

제337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5년11월18일(수)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계속)
47.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계속)
48.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계속)
49.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계속)
50.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계속)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동물원법안(계속)
59.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계속)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4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5
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5
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5
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5
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6
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7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7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7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7
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10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10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11
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12
1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2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13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3
1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13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14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16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16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6
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24. 환경정책기본법(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2
25. 환경정책기본법(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2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4
2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6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7
2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9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9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9
3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9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3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3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3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57)	37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60)	37
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37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4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47.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48.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49.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50.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계속)	45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47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47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47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5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50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50
5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0
58.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55
59.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55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55
6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57
6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58
6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9)	58
6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2)	58
6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154)	58
6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476)	58
6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61
6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63
6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63
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7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65
4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67
4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68
8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68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안소위 위원님이셨던 주영순 위원님과 민현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인제 위원님과 이완영 위원님께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10시13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김용남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권 제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 1번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6쪽, 김용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 벌금형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회 법정형 정비 계획 등에 따라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김용남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주영순 의원님 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영순 의원님 안은 현재 위원회가 미구성된 상태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남 의원님 안은 개정안대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차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2쪽의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폐지 건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물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이 계속 활성화돼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설치해 가지고 한 번 했고, 이게 임기가 끝났는데도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 재구성을 안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규정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기관 정비 계획에도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벌금형 상향 조정은 지금 국회 법정형 정비 일환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칙의 시행일도 현재 볼 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전은 대부분 다 무쟁점 법안들이니까 수석전문위원이나 차관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부족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의결하도록 그렇게…… 아, 장하나 위원님 오셨으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김용남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4.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5.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김상민 의원, 주영순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순 의원님 안입니다.

미인증 수도용 제품 등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현재 벌칙만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미인증 제품·자재를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1차적으로 수거, 파기 등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수거 등을 명령하고 최종적으로 직접 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 제조·유통의 금지는 이미 현행법 14조2항에 따라서도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인재근 의원안 중에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 김상민 의원안 중에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 의무 부과 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병원,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도 국민 위생안전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주영순 의원안 중에서 수도용 제품·자재가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달라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취소된 날부터 1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자재를 제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개 개정 사항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미인증 수도용 제품 등에 대한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대로 수정된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관련해서는 개정안대로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17쪽,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 의무 부과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대로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기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포함한 수정의견,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10시20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6항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을 풀어 놓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마찬가지로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정안 수용합니다, 검토보고.
○소위원장 권성동 이견 없으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10시22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항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2쪽, 과태료 규정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10시23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

까지 홍익표 의원, 이인영 의원,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5쪽, 먼저 안홍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유해성 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취소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청문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의 내용이 침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에 근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취소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문 절차 도입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8쪽 홍익표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은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찬가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은 환경부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이인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되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업무 등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4쪽 부칙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안홍준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홍익표·이인영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의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유해성평가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화학물질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기관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부칙의 공포와 관련해서는 안홍준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공포 후 6개월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홍익표 의원님하고 이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원식 위원** 이인영 의원님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우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화학물질 관련 조직이 없지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현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업무는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일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협회가 아시다시피 기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기술원 업무를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위원** 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 이것은 환경관리공단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환경관리공단은 취급 시설에 대한 진단이나 점검 쪽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기술원에서는 생활화학제

품에 대한 안전관리 표시기준이라든지 제품 관련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질문 좀 할게요.

42쪽, 똑같은 분야입니다.

수석전문위원, 1항은 보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설명이 없고, 2항에 보면 이게 협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협회는 또 살려놨잖아요?

협회만 하던 것을 공단을 추가를 한 것인지, 기밀 누설 등 문제가 있다면 협회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로는 “다만”에다가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기술원에 주고, 위에 위임하는 내용하고 불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위 본문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뭐며 “다만”에다가 둘 중에 하나 걸리면 기술원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제품에 대한 화학물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기술력이 제대로 가 있지 않고, 이것은 화학물질 전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관리팀, 화학물질안전진단팀, 화학물질공동등록지원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굳이 떼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고,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공공 부문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해서 향후에 업무조정을 잘 해 가면서 해야지 이것은 어디에 굳이 자리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기왕에 있는 조직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지요.

○**이완영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좀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8조(권한의 위임·위탁)는 일반적으로 권한 위임·위탁 규정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기관들 보면 소속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되는 것은……

○**이완영 위원** 화학물질안전원이 어디인데요? 무슨 소속이고 무슨 법에 근거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화학물질안전원이 환경부 소속기관입니다.

○**이완영 위원**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과학원과 똑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화학물질안전원이 법적근거가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직제에 들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2항처럼 법적조항을 넣어야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에 보면 환경부 소속기관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두지 않아도, 직제령에 따라서 들어가는 기관들이 나열되어 있고, 안전원이 이전에 없다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 가지고 안전원이 차지하는 포션, 업무가 많아져서 정부 업무를 위탁해 줄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기는데 그때 하게 되면 법 개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원이 생기고 업무를 이번에 근거조항을 둔 것이고요.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기능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보의 문제를 확실하게 법에서 명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것이지요.

○우원식 위원 이것을 공공 쪽으로 옮기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지금은 업무를 별도 담당하지 않는 부서를 확장하고 비용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쪽으로만 한정한다고 하니깐, 공공기관 중에 환경관리공단이 그 유사한 업무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히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해 놓고 시행령에서 지금 업무 관장하는 것에 맞춰서 잘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만”을 제외해서 대통령령에서 기관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단서 조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기술적으로 고민을 한 번 더 시행령 만들 때 할 필요성이 있지요.

○이완영 위원 화학협회는 왜 살려야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협회가 하는 업무도 또 있

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문제 제기는 왜 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들이 보면 ‘기관 간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화평법, 화관법 생기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한 기관이 전담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업무를 나눠서, 연계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48조2항 단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이인영 위원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니까 저는 수정·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이인제 위원 위원장님, 이 법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화학물질 가운데 불산이 또 대형 누출사고 발생했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1000ℓ 던데, 1t이예요.

전에 구미에서 사고 났을 때는 몇 톤이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구미에서 일어날 때는 8t 정도……

○이인제 위원 8분의 1 정도가 누출됐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인제 위원 그래도 엄청난 재앙이 왔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오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등록·평가할 때 어느 정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사고 대비·대응을 합니다.

○이인제 위원 불산이 자꾸 터져요. 굉장한 피해를 주던데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불산이 사고가 터질 때 원액이 액체 상태로 흐르면 좀 낮고요……

○이인제 위원 제 지역구에도 불산 취급하는 업소에서 한번 터져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최봉홍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합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우선 의결하고요.

○최봉홍 위원 의결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차관님, 화평법, 화관법에 의해서 규제받고 있는 기업이 수천 개 되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봉홍 위원 지금 환경과학원하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기업이 해서 그거 다 처리하겠습니까? 이 두 기관이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봉홍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정부 3.0 차원에서 보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전문 기술업에 개방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과학원장, 화학원장이 외부에서 개방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외부에서 개방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가·등록할 수 있는 그 업체 자체를 전문적인 기구를 쓸 수 있도록, 민간도 넣어야 처리하지 싶은데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지금 일부 한정된 것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민간에 갑작스럽게 열어 놓으면,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최봉홍 위원 그런데 수천 개 기업이 그것을 하려면 차레를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몇 달이 걸릴 텐데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 민간에는 못 주고……

○최봉홍 위원 결국은 노동부처럼 산하에 하던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줘 가지고 하청, 재하청 해서 또 나갈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민간으로 다 넘기면……

○최봉홍 위원 시행 초기에 바로 잡아놔야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시행 초기에 민간에 너무 확대해 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봉홍 위원 그것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완전하게 해 가지고, 그래야 등록이나 이게 안전해집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노동부가 안전원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밑에 하청, 재하청 주면 만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실질적인 절차는 못 밟습니다.

지난번에 대립화학 같은 데도 가 보니까 하청을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은 15억이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작업을 40일 꼬박 해도 될까 말까 한데 3일 만에 끝내요. 그러니 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대로 오늘 통과시키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금년 예산에 장비 같은 예산은, 오늘 아침에도 테러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25억 정도 증액을 시켜 주셔서 당초 48억하고……

○최봉홍 위원 그게 25억 가지고 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도 그것만 증액시켜 주셔도 1차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더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의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10시39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홍익표 의원, 부좌현 의원,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38쪽 화평법 개정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화평법 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9쪽에 부좌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계류’를 한자와 병행표기(繫留)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류는 그 뜻이 혼동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정안은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최봉홍 위원** 개정하기는 뭘 개정을 해, 그냥 놔두면 되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조금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안홍준 의원님 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규정 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7쪽, 마찬가지로 안홍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경고와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정안은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개선명령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 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차관!

○**환경부차관 정연만** 46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은 검토보고에 따른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49쪽, 계류를 한자와 병행표기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야 될 실익이 있는지, 저희들은 현행 유지해서 개정안을 수용 안 해도 된다는 입

장이고요.

그다음에 52쪽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검토보고의 수정의견을 수용하되, 55쪽에 제23조의3제1항2호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서 어느 하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시 다시, 뭐라고요? 어디요? 23조의3제1항?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55쪽 제23조의3제1항2호에 보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어느 하나에 대한 게 밑에 나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그런데 23조의2제1항에 여러 개 나열된 것 아니에요, 차관님?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1항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완영 위원** 여러 개가 있다면 이게 맞지, 현재 것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청문을 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만 청문하도록 돼 있는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갑자기 뭘 얘기야?

○**이완영 위원** 갑자기 청문이 왜 나와?

○**최봉홍 위원** 55페이지 23조의3항에 1,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아니, 23조의2에 1, 2, 3호가 있잖아요? 그것 어느 것이라는 게 맞지, 왜……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환경부 수정안이 뒤에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안 23조의2, 53쪽에 있는 것 1호, 2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법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다른 법들도 다 밑에 하위 법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상 들어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위법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환경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것은 23조의2항 1호에 따로……

○**이완영 위원** 그러면 23조의2에 환경부 안으로

해서 내주셔야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수정안이 위원님께 깔아드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이 안 나중에 그것을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 의견을 조정해서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보류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계류라는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법을 우리가 알기 쉽게 용어를 바꾸는데 계류를 ‘진행’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소송의 진행?

계류를 굳이 한자 넣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좀 쉬운 말로 하면 말이 통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이것은 이 법 말고 다른 법에도 다 계류로 돼 있고 한자 병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병기를 하려면 다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계류를 다른 용어로 바꾸려면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계류로 넣어두고 한자 병기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계류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1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0시47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이상일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2쪽입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석면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와 실태조사의 공개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정기 조사는 3년, 수시조사는 필요할 때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실태 조사의 주기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면 필요시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시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주기는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66쪽입니다.

이상일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현행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내용인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석면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석면조사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대집행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이상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석면해체·제거 공사 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공사 발주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에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건축물석면조사 위반 시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집행절차도 있고 또 조사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쪽에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추가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62쪽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하위법령에 그대로 하겠단?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정기조사 3년하고 수시조사 필요한 경우에 수시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공개하는 것만 지금 받아들이겠다 그 얘가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그동안 왜 공개를 안 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초기에 법 만들면서 이전에는 왜 공개 조항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알권리 때문에 많이……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6쪽에 건축물석면조사 위반 시 제재도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데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8쪽 이상일 의원의 개정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아니, 앞에 보면 2000만 원인데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은, 이것도 200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노동부하고도 업무가 유사한데, 실제 제거작업을 하면서 다 문제 되는데 1000만 원 하면 그것 그냥 엉터리로 하고 공사해 버리지……

차관님, 이것 1000만 원으로 한 것 2000으로 좀 높입시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1000만 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앞에도 2000이거든요.

○소위원장 권성동 내용이 틀리지.

○이완영 위원 내용이 다른데 이것보다도 더 중한 게 뒤에 거예요. 저는 5000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뒤에 것은 뭐냐 하면 해체·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10시52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부좌현 의원, 주승용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71쪽입니다.

부좌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광역지자체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73쪽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시·도지사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빛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초단체장에게는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빛공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강창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개정안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의 검사·조사 등 시·도지사의 권한 업무 중 시설물관리, 조명으로 인

한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도지사가 대부분의 빗공해 관리 대상 조명기구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져서 법적인 근거 없이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현실을 고려한 입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강창일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 부좌현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주승용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조례로 엄격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 조명기구의 보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하는 체제는 맞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의 권한의 위임규정은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는 ‘6개월’, ‘공포한 날’,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공포 후 6개월’로 해 주시면 저희들 준비에 좋지 않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수미 위원** 시행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공포 후 6개월로, 왔다 갔다 하면, 조문마다 다르면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착오를 가져올 수 있어서 6개월로 해서 전체 다 같이 스타트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만큼 허용하고 조례로 그것보다 엄격하게 하는 게 헌법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임 범위?

○**환경부차관 정연만** 조례로서 하는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을 뒤 가지고, 다른 법에도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10시57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9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민간 자연보호 관련 단체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자연보호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호 관련 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해당 지자체에서 주던 것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국고는 받는데 지방 포션(portion)이 지원이 안 되면서 법적 근거를 두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최봉홍 위원** 정부가 안 내려고 수용하는 것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자치단체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전에 해 주다가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 자기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 해 줄 수도 없고……

○**이완영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하고 충돌되는 것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법 조항이?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방재정법에서 했던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남발이 되니까 관련 중앙부처에서 국고를 지원해 줄 때에 자치단체의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법을 반영시켜라,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환경 관련 단체 중에서도 관련 법에 이런 규정을 안 두면 국고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방 포션은 안 되니까 지원을 받다가 확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줍시다, 문제없다면.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지방재정법 만든 이유가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좀 제한을 해서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지방재정법을 만든 취지가 나는 몰각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든 안전행정부인가요, 지금은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 의견 한번 들어봤어요?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장 배치호** 법무담당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오히려 각 법에 있는 운영비 부분이 명확하게 지원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개별 법 개정을 통해서 정비하라고 저희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게 뭘 얘기예요?

○**이완영 위원** 무엇을 정비하라고?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장 배치호** 사업비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운영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지방재정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행 법 조항에……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사업비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운영비 달라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장 배치호** 예,

그래서 그 부분 운영비……

○**소위원장 권성동** 각 단체들의, 자연보호 단체면 자연보호 단체들의, 자생적인 단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좀 충당을 하고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약간 보조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은 모르지만 운영비까지 이것을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행자부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9월 16일자로 안행부에서 관련 부처에다가 관련 법령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우원식 위원** 현장에서 이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주고 운영비는 안 주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행자부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개정을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각종 자생 단체라는 소위 말하는 시민자생단체가 회비는 안 걷고 전부 모든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다 의존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다른 행정기관을 창설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행정기관을 창설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민세금이 제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표를 먹고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와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무분별하게 워낙 나가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데 또 계속 이런 모든 단체들이 붓물처럼 이 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완영 위원** 행자부 의견 받아서 심의합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의견 한번 받아서 다음 법안할 때 의견 조율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한번 더 받아 보겠습니다.

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런 의견을 받았다는 것 아니야?

○**이완영 위원** 아니야, 저것은 정비하라는 공문이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 받은 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 한번 받아 가지고 다음 법안심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04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서 23항까지 권성동 의원, 황인자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84쪽입니다.

먼저 황인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최근 2년 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환경부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후에 재지정 제한기간은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사태가 50건이나 돼서 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6쪽, 양승조 의원안입니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매년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환경산업

연구단지 조성·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운영을 공단 및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지를 조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고시해야 될 사항을 규정한 안 제13조의3제2항은 단지의 위치·규모, 운영계획만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 단지의 시설 배치 등도 추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고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성하려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칭과 관련해서는 안 제13조의3제3항에서 ‘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 12일 본회의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부칙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6쪽 이하 기타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정부안은 일단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께서 하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87쪽 안에 보시면 ‘매년’하고 후단 신설에 대해서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산업 연구단지 조성·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 있는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의 기타 개정사항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정부안부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는 환경부장관이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서 기존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해 주는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및 지자체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현재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적으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보조금 비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데 출연금 비목으로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출연하는 등'의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5쪽,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의 시스템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녹색경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9쪽,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단지 시설 관련 사용료 징수 근거 그리고 단지 조성·운영의 외부기관 위탁 근거,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

거를 신설하고 있고, 국가·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입주기업에게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다만 국가가 지자체의 단지 조성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현재 단지의 추진 실적이 미흡한데 운영비 지원 여부와 무관하고 지자체가 단지 조성 후 운영을 국고에 지나치게 의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동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심사원의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서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심사원을 2명 이상 두도록 한 규정 그리고 심사원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인증심사원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 인증업무가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으로 개정안 시행 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춰야 하나 심사원 자격이 폐지되면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등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시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현재 환경전문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육이수 의무를 삭제하고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기술사 1명, 기사 3명의 기술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종의 기술 인력은 이미 등록 시점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봐서 폐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125쪽 이하 기타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요.

127쪽의 시행일은 황인자 의원님 안은 하위법

령 개정 소요 시간을 감안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개정안대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차관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는 국내 환경기업이 공공기관에서 기술을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이를 반영한 개정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안을 수용해서 조문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검토보고를 수용해서 정부 개정안 수정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제도 폐지 등인데 애초에 정부에서는 성적표지 인증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너무 부담을 주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검토보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를 활성화해서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검토보고를 수용해서 정부 개정안을 철회해서 현행 유지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 이수 의무 폐지는 검토보고에 있듯이 이게 이미 기술 인력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 환경인력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실효성이 없으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형식화되어 있어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수용해서 황인자 의원님의 '3개월'을 '6개월'로 부칙 조항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 86페이지 양승조…… 이거 매년 하는 게 바람직한 가, 이게 뭐예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 조사예요. 이거 규제 심사를 받았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을 지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규제가…… 이거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왜 국민을 위해서……

○은수미 위원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저기에게 물으니까 은수미 위원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부에 대해 물으니까 정부가 답변하도록 가만히 계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기술과 산업을 이렇게 보면 규제보다는 조사를 해야 기업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나 산업 하면 정부에 지원도 요구하고 우리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정부 정책을 수립해서 R&D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하지요.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에 어떤 부담을 주는 차원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구요.

○이완영 위원 밑에 보면 요청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 이런 규제가 있잖아요?

○은수미 위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된다' 이것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데, 지금도 사실은 기업에서 요구하면 이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산업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

자부 다른 산업도, 수많은 산업이 있는데 이렇게 매년 조사하는 예가 있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다른 데도 조사들……

○**이완영 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기업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정부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정책 수립하는 데, 매년 조사를 해야 수립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닐진데, 모든 정책이, 산자부 산업 정책이 매년 조사해 가지고 정책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그런데 산업부도 일정한, 왜 산업 무슨 조사들 하지 않습니까?

○**이완영 위원** 좀 더 이거는 조사를 해 주세요, 산자부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완영 위원** 더군다나 이런 게 법으로 매년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필요한 거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때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법으로 굳이 올려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면 비용 들고, 정부는 그냥 하나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굳이 법률로 끌어올릴 이유가 있나요, 이 법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매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할 수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를 꼭 법률적 근거를 갖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매년 안 해도 행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명시가 매년 되어 있다고 매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필요하다면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거는 올릴 필요도 없고……

○**이완영 위원** 그래서 법으로 굳이 올릴 이유는 없겠다, 공무원 상식으로 보면.

○**환경부차관 정연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의원님께서 매년 정부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개정안을 존중하는 뜻에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완영 위원** 두 번째, 98페이지 성능확인,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에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완영 위원** 이거 성능확인 도입하면 소요예산이 엄청날 텐데, 성능확인을 이렇게 쉽게 법으로 도입하는 게 저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이거는 기업이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진출하려든지 어디에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기업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공인된 기관에서 이런 기술이라는 걸 증빙을 한 증빙서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그런 증빙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완영 위원** 그런데 기술원에서 이런 게 더 많이, 성능시험 장비가 많이 준비돼야 되지요, 이거 하려면?

○**환경부차관 정연만** 장비는 지금 일부 있고요.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기술 인력만 좀……

○**이완영 위원** 제 말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장비를 갖춰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보강해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꼭 좀 해야 됩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장 김정환** 환경기술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기술에 대해서 이런 성능 확인하는 신기술 검증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신기술 성능평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신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환경기술까지도 다 정부에서 공인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장 김정환** 신청을 받아서요.

○**소위원장 권성동** 신청을 받아서 이리이러한 기술력이 있다 하면…… 이게 신청 건수가 많으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장 김정환**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또 검사비를 물론 받겠지만, 검사비 받고 하는 거지요?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검사비 갖고 자체 충당이 다 되나요, 검사 비용이 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상당 부분을 비용에서, 왜냐하면 기업이 원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리고 우리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직이나 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이완영 위원 최초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존에 뭐 갖췄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환경부도 참 답답하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지 뭐 하려고 해요?

새로이 뭘 하니까 앞으로 더 보강하고 장비도 늘리고 인력도 더 늘리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성능시험 확인하는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갖춰져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제도 도입하고 하나도 투자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각이 좀 답답해 죽겠네.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충해 가야 되는데 실무자는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우원식 위원 그러면 정부가 해 줄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 다 받아서. 그리고 본인들이 돈 내서 하는데 이걸 왜 안 해 줘요? 할 수 있다는 거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할 수 있고 본인들이 돈 내서 하고,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하고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걸 왜 국회가 반대를 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만들어 주시면……

○소위원장 권성동 그게 아니고 기존 인력으로 가능하냐……

○우원식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 노하우는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수가 늘면 당연히 비용을 많이 받으면 인력도 늘려야 되고 장비도 늘려야 되고……

○우원식 위원 늘려서 해야지, 늘려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늘려야 됩니다.

○우원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늘려서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 인력 늘리는 것이 환경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도와주고 또 예산도 편성할 수 있게 해 주고 인력도 늘려 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언제부터 이렇게 또 정부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나왔습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이걸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국회가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뭐 있어?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부처끼리는 합의 다 된 거지요, 정부안으로 나왔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다 된 겁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좀, 84쪽 황인자 의원 개정안의 내용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 질문을 드렸다고요. 시행규칙을 보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기업과 사업장은 전혀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하고 삼성전자에서 사고가 무지하게 늘어났는데도 LG하고 삼성은 자기네들이 녹색기업이라고 주장을 해요. 브랜드 광고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삼성, 수원에서, 사업장 단위이니까 여기는 지정취소가 꽤도 다른 사업장은 녹색기업인 거야. 자기네들은 광고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녹색기업이라는 것과 사업장은 다른데 법은 기업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편법을 다 쓰고 있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그대로 놔두지요?

그래서 이걸 강화시켜 봤자 또 빠져 나간다고

요. LG 같은 경우가 최근 사고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계속 광고를 자기네들이 녹색기업인양 내더라고요. 녹색기업 인증제품 이렇게 내는 것을, 시행규칙에 그렇게 해 놔어요.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게 말이 돼요? 기업하고 사업장이 같습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을 바꿔야지요, 이거는 시행규칙 사항이니까. 그래야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정이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녹색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법안이 시행규칙과 맞는 거고요.

이 법안을 개정해서 강화시키는, 녹색기업 인증을 받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그것과도 부합을 하는데 지금 시행규칙하고 법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규칙이.

그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이 그냥 황인자 의원님 개정안만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제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개정안이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은 후속 조치가 따라 줘야 돼요, 환경부의.

제가 이걸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어. 그런데 답도 없고, 그러면 2년을 3년으로 늘려 봤자 대기업들은 다 빠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좀 해 달라, 그것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기업하고 사업장이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면 녹색사업장 인증제도라고 하시든가, 녹색기업 인증제도라고 하지 말고.

○최봉홍 위원 시행령 만들 때 보완하는 거로……

○은수미 위원 예, 그건 후속 대책을 반드시 해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 취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장별로 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이 그렇다는 걸 해야 되는데 전체 그룹으로 해서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원식 위원 녹색사업장으로 해야 되겠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하려면 사실 그런 개념인데……

○은수미 위원 아니면 광고를 그렇게 못 하도록 제재를 하든가, 자기네들 기업인양 하거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은수미 위원 그걸 반드시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게 하위법을 고쳐야 되는 건지 법을 고쳐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저는 이 안은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녹색기업 문제는 요즘 심각하잖아요. 녹색기업의 60%인지 70%인지가 죄다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봉홍 위원 회의록에 시행령을 보장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은수미 위원 예, 꼭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장해야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러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어떤 게 합리적인지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거는 통과시키지 말고……

○은수미 위원 통과시키고요. 대신 후속 대책……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거 통과는 하고, 제도개선을 말씀하셔 가지고……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제가 요청을 한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85쪽 보면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라고 하고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쪽 유사 입법례에 보면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16조의3제1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보면 같은 조항이 있고,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18조 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소위원장 권성동 마지막 하단 “이 경우”, 이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름만 바꾸어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은수미 위원 그건 맞는……

○소위원장 권성동 맞는 얘기 같지요?

집어넣고요.

86쪽 양승조 의원 안은 보류하고,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 매년 하면 되지 그것을 꼭 굳이 보류해요?

○이완영 위원 그것은 안 돼요.

○은수미 위원 어떻게 야당 안만 매년 보류하세요?

○이완영 위원 여야를 떠나서 저는 합리적인 판단만 해야 되지, 산자부는 전부 산업정책인데, 시행규칙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우원식 위원 지금 이것을 매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리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게 정부안으로 들어오면……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86쪽 매년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조의2제2항 하단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빼고 9조의2제2항 그대로 가지요.

○최봉홍 위원 현행대로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매년 실시하는 것은 가되 민간기업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부분 그것은 빼고……

○장하나 위원 오히려 반대로 “매년”을 빼고 밑의 후단 신설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권성동 이완영 위원이 워낙 이거 다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장 위원은 절충안도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 위원은 어떻습니까?

○이완영 위원 조정한다면 “매년”은 빼고 밑의 것 넣고,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환경부가 견해를 드렸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시행일은 6개월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처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환경정책기본법(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5. 환경정책기본법(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11시33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 장하나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29쪽입니다.

먼저 김우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와 인공조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와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전자파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공조명과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하고,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빛공해를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의 한 요소로 추가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정도에 대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32쪽 장하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환경기준 설정 방법의 구체화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기준을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제12조제2항보다는 국가의 환경기준 설정 의무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제1항에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129쪽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와 인공조명 추가 등에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에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전자파에 대해서는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파는 삭제하고, 인공조명이나 일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마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2쪽 환경기준 설정 방법의 구체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좋습니다.

○**장하나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전자파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 안 된 것은 전세계 공통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과성은 모르지만 그래도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건강상 피해가 있다는 이런 통계들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과성이 있는지 입증 못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해서 전자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만 과학적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 많은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기에는 산자부도 그렇지만 관련 업계의 이해도 많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입증되기 전에도 전자파에 노출되면, 예컨대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많이 걸린다는 세계적인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사전예방의 원칙이 우리 법제에도, 우리 정부 정책에도 도입되는 게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서 유해요소로, 요인으로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권성동** 전자파 부분은 그전에 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님 의견은 압니다마는 이 법을 이 범위내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외하고 수정의견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해 봤자, 과거 속기록을 보면 이 부분 갖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우원식 위원** 그래도 전자파 이제 통과시키지요. 이제 그럴 때가 됐지요.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 국민만 전자파 면역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은수미 위원** 삼성이나 대기업이 주로 전자파 관련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소위원장 권성동** 제일 문제 삼는 것은 한전이에요. 산업부입니다.

○**은수미 위원** 한전, 삼성, 전자파 부분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민한테 피해를 전가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완영 위원** 입증이 아직 안 됐다잖아요.

○**은수미 위원** 전자파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자료를 보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이완영 위원** 이거 논란 엄청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은수미 위원** 인과관계의 문제하고 과학적 근거의…… 과학적 근거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요, 명확한 인과관계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인공조명이라도 넣는 것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환경부가 국민을 위해서 대안을 가져오세요. 국민들은 전자파 때문에 불안한데, 정부와 대기업의 부정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못 넣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내 아이한테 전자파 피해를 당하게 해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전자파 차단 관련 제품만 많이 팔려요. 왜 그것을 국민한테 전가시켜요?

○**우원식 위원** 전자파에 대해서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생활환경 이게 적용되고 있는 나라들, 외국 사례를 죽 리스트업을 해 주세요.

오후까지 좀 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외국 입법례 조사된 게 있어요? 그리고 장하나 위원 말씀대로 전자파가 외국에는 다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되고……

○장하나 위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게 아니라, 입증이 안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전자파가 왜 백혈병을 일으키지, 이것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런데 전자파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백혈병도 많이 걸리더라 이런 데이터는 있으니까 사전예방 조치로 일단 입증되기 전에는 기준을 마련해서……

○이완영 위원 여기에 전자파 넣는다고 사전예방 조치 되는 것 없어요. 그것은 따로 우리가……

○은수미 위원 무슨 소리에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우원식 위원 이완영 위원은 완전히 기업 대변인이예요? 왜 이래요?

○이완영 위원 저는 환경부에 요구했잖아요, 외국 입법례도 가져와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원식 위원 이거 오후에 다시 보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권성동 어차피 오후가 되어도 전자파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우원식 위원 왜 수용하기 어려워요?

○은수미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인공조명까지 넣고, 우리들이 대안을 요청하는데 구체적인 자료, 입법례 이런 것을……

○소위원장 권성동 빔공해 부분만 수용하고 전자파 부분은 제외하고 법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우원식 위원 오후에 합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마찬가지로요.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한 시간 논의했어요.

오후에 해요?

○이완영 위원 아니요, 그냥……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 하지요.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전자파 부분을 제외하고 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5항,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11시42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6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35쪽입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권고 및 조치명령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서 사용목표량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이 제도를 “순환자원 성과관리 제도”로 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통과 여부를 봐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민법 제32조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재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설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공제조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생산자의 포장재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책임의무를 대신 이행하기 위한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영리목적의 법인도 재활용공제조합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해서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의 폐지는 검토보고에 있듯이 정부 개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폐지나 폐유리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다 살렸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앞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순환자원 성과관리 제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면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40쪽에 「민법」 제32조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인데, 초기에 EPR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민법에 따른 단체로서 하고 있던 페타이어 공업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사항이었고 이후에 조합으로 다 전환이 됐고 현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저는 좀 물어볼게요. 우리 소위원장님이 낸 법이어서 반대를 안 할라고 그랬는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용목표량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충분히 재활용 된다. 대부분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35페이지잖아요.

136페이지로 넘기면 폐지, 폐유리, 폐유리용기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요, 조금 넘던지 이런 건데요. 폐철캔은 목표를 많이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우원식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사업자를 지정하고 의무율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건데 이 제도를 폐지하면 특히 포스코나 이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외국에서 싼 철 같은 것 갖다가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재활용제도가 굉장히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이 확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 있고 가격폭락 우려도 굉장히 심각하고 재활용 기반도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폐지, 폐유리, 폐유리용기는 저희들이 달성을 하는데 폐철캔은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여기에서 폐지하되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 촉진법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받아 났습니다. 순환자원 성과관리 제도로 거기서 받기 때문에 연계만 되면 달성되지 않는 것은 그쪽에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은수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지요.

○**이완영 위원** 이것은 자순법 보고 하면 되지요.

○**은수미 위원** 예, 보고 해야지요. 그것 순서가 틀렸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 자순법 통과 시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이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법에서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지만……

○**은수미 위원**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이완영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 보류했다가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완영 위원**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원식 위원** 동시 처리인데 이게 자순법에 그 내용을 확실히 담아야 돼요. 순환자원 성과관리 제도 이렇게만 해서 될지……

지금 이게 사업자를 지정해서 재활용 의무율을 정해 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의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폐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유리를 겨우 맞추잖아요? 이게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거지 제도를 폐지하면 절대 안 되거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순법에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자순법 안에 그렇게 내용에 담기면 이 법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충 만들어 놓으면 그것 폐지할 수가 없지요.

○은수미 위원 동의합니다.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오히려 자순법에 는 더 확대해서 규율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됐 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자 말 이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자순법 검토할 때 다 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11시49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의사일정 27항 이인 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4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수출·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기 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 는 긴급조치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고 또한 수입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되면 그 폐기물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 다.

개정안을 통해서 수입폐기물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 다만 이 법의 ‘적용범위’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유해물질(방 사성물질을 포함)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다 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 고요.

또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해물질 의 종류와 포함기준을 각각 대통령령과 환경부장 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중복 되는 조문이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에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조치의 사유 구체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서 말씀하 셴듯이 개정안을 수정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146쪽에 보시면 2호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해야 된다. 방사성물질에 대한 권한 자체가 부처마다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정의견처 럼 1호에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 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를 해서 이쪽에 들어오 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장하나 의원이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하고 입법취지가 비슷합니까?

○은수미 위원 어떤 것?

○소위원장 권성동 2015년 11월 11일 장하나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수미 위원 같은 조항이 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144쪽, 여기에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는데?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니, 그 부분은 장하나 위원께서 그날 대체토론 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요. 11일 날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직 상정도 안 됐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입니 다

○소위원장 권성동 비슷하면 당겨 가지고 같이 대안으로 만들면 되지.

○이완영 위원 아니, 상정이 안 됐다잖아.

○소위원장 권성동 상정 안 됐어도 당겨올 수 있어요.

○은수미 위원 간사 간에 협의하면 당길 수 있 지요.

어때요? 내용이 조항이 겹치는 게 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내용이 같아요? 중복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유사한 내용입니다.
- 최봉홍 위원 조항이 겹치는 거예요?
- 장하나 위원 예.
- 은수미 위원 그러면 당겨서 할 수 있어요.
- 장하나 위원 병합해야 될 내용입니다. 중복……
- 소위원장 권성동 어떻게 해요? 야당 입장을 갖고 오세요.
그냥 이것으로 단독 통과시켜요, 아니면 병합해서 오후에 다시 통과시켜요?
- 장하나 위원 간사님이 안 계셔서……
-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은 정리될 때까지 오후에 다시 하고요. 만약에 야당 의견이 정리가 되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겨서 같이 상정시키도록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만.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은 이 범위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을 그 법에 의해서 규율한다?
-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오케이.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11시54분)

-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제28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50쪽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개정안 수용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위원장 권성동 그동안에는 처벌 안 했나요?
-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차관, 포획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직접 받을 수 있고 대행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항으로 2개 다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커버가 돼요?
-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예.
- 소위원장 권성동 문제가 없지요?
-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법안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봉홍 위원 쟁점 법안이 아닌 것은 설명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합시다. 설명 듣지 말고 간사 간에 의논해 가지고 오케이 되면…… 다 들을 필요 뭐 있어?
-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쟁점이 있다니까요.
- 최봉홍 위원 쟁점 없는 법안만.
-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쟁점 없는 법안이라고 해서 분리해 놓은 데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확 갈 수가 없어요.
-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은 설명하라고요.
- 이원영 위원 차관님, 15번 길어요?
- 소위원장 권성동 길어요, 안 돼.
- 이원영 위원 그런데 별로 내용이 없잖아?
- 환경부차관 정연만 조금 설명을 해야 될 사항 들입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대리 이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권성동 소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소위원장 하는 김에 빨리 처리하실 게 있으면 처리를…… 어차피 의결정족수는 안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정부는 회의에 임하셔도 됩니다.

2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대리 이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에 ‘수은’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명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동 법의 목적과 관리 대상에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 시기가 2016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에 관련된 내용으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서 일부 제품군과 공정 과정에서 수은, 수은화합물이 사용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미나마타 협약과 동 협약의 부속서(A)·(B)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에 대한 예외를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외에는 예외로 둘 용도가 없기 때문에 위임 규정은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계측기와 전지 생산 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사용금지일을 2030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4쪽입니다.

현행법에서 지정 폐기물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보관시설 등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시·도지사에게 신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6쪽입니다.

별칙 규정입니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과 취급제한 잔류성오

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아래 표와 같이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벌칙 강화 규정은 법정형 정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 대비 벌금형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8쪽의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제명 변경 및 ‘수은’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그동안 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나마타 협약이 들어오면 이제 ‘수은’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은에 유기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를 빼고 법 제명을 바꾸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정비하도록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을 유지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7쪽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에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보관시설 등 신고 의무 폐지를 했는데요, 이게 165쪽에 보면 신고 사항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이 물질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 허가받고 신고되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법 정비 차원에서는 맞다고 해서 저희들 개정한 것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6쪽의 벌칙 조항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사무처의 법정형 정비 기준에 비해서는 징역형 대비 벌금형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화관법을 개정할 때에 상당히 사고라든지 독성물질 다루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벌칙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비슷한 그런 물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을 유지시켜 주

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정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인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의견 없습니다.

○최봉홍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인영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을 정부도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컨센서스(consensus)가 마련된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 위원, 권성동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3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19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 이석현 의원, 박성호 의원, 주영순 의원,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34항 정부가 제출한 역시 같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먼저 175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기술진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이를 하수도법상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유사 환경시설의 정기 기술진단 규정을 감안할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계·시공·감리한 자 등을 제외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기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현재 기술진단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경과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6쪽에 기술진단 결과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운영자에게 시행토록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시설 운영자가 직접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관한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끝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니요,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229쪽까지인데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조류피해 예방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상을 호소로 한정하고 있는데 하천 등을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류피해 예방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7쪽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수질 등의 조사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생태계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심각한 수질오염 등으로 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복원계획 수립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1쪽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리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영세업체가 측정기기를 직접 관리할 경우 관련 인력을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대행업을 두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 수도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분수, 바닥수 등의 시설을 의미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의가 포함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박성호 의원님 안은 수영장 및 유원시설 내의 유기시설은 타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수질 및 관리기준을 준수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성호 의원님 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주로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하여 무료로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210쪽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이미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2쪽에 주영순 의원님과 정부가 발의한 안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소속의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15쪽입니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점용·매립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허가 또는 인가하는 경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타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조건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7쪽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등의 업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관련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어떤 업무가 어느 협회에 위탁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19쪽 기타 개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시행령 관련 부칙 사항은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항목별로 정부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먼저 175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기술진단 제도에 대해서 이석현 의원님이 개정안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 일부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하는 부분을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수정안?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봉홍 위원** ‘다만’ 그것 빼고 한다 이거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설계·시공 이건 빼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178페이지부터 수정안이 죽……

○**이완영 위원** ‘다만’을 넣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도 종말처리시설 운영하는 사람하고 설계·시공·감리까지 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서 기술진단을 하는 업계가 줄어들고, 하수도법에서도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만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진단 전문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주로 전문기관이 설계·시공하고 이런 업체들 관련입니다. 전문 업체들이에요. 하수도나 뭐 엔지니어링사들이지요, 하수처리나…… 하수처리시설 하는 업체가 공공처리 하거든요. 그 엔지……

○소위원장 권성동 기술진단을 환경공단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겠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거기도 합니다. 거기도 다 할 수 있게끔……

○소위원장 권성동 쥐도?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에 경쟁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민간기관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까, 환경공단만큼?

○환경부차관 정연만 일부 기업들은 그동안에 하수처리나 공공처리 한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능력이 되는 거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지금 큰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다음에 정부안에서 조류피해 예방 범위, 184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호소만 해당되는 조류피해 예방에 대한 것을 하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해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7쪽의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2항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정리하고.

다음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환경부차관 정연만 복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정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서 환경부장관이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이야기하셨는데 수정안을 저희들이 수용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자체장한테 명령하는 것은 살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명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받겠다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봉홍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명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지자체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조항 두기는 좀 그래서……

○소위원장 권성동 처벌규정은 없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지자체장에 대해서 처벌조항은 안 뒀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은 선언적 기초의…… 실효성이 있나요, 이 규정 자체가?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도 이게 기속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법률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1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신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하셨던 측정기기에 대한 것들이 조작 사건 등이 발생해서 대행업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봉홍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까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을 안 시켰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대행도 하는데 자격요건이 없다 보니까 아무 때나 대행을 시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데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행을 시켰는데 대행하는 사람들이 부실해 가지고 부실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대행하는 사람들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만 대행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오케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97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 신설.

○환경부차관 정연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정의가 너무 넓어도 관리도 안 되면서 방지될 우려가 있어서 검토보고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고 저희들 이런 측면에서 검토보고를 수용해서 수정안으로 제시된 그 안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어떤 안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뒤에 198·199쪽에 보시면……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정의견.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까지는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안했었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화로, 국회에서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 시키는 겁니다.

○최봉홍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그렇게 하고, 200페이지 한번 봅시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200페이지에 수경시설 설치 신고 및 관리 기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하고 정부안하고 합쳐서 수정의견을 검토보고에 제시하셨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은 어떤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201쪽부터 즉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정부안하고 수정의견하고 차이점이 됩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정부안은 원래 모든 시설, 아파트에 있는 것까지 다 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면 관리도 안 되면서 너무 다 규제를 하려는 성격이 있는데 관리가 될 수 있는 범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든지 전염성이 있다든지 규모가 큰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부분으로만 한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 새로운 규제인데 이것 만들어 놓으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감소되지 않겠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그것 때문에 범위를 좀 축소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까지 지침으로 운영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한

5%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했다든지 하는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박성호 의원님 안하고 다르게 과태료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이것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범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수경시설 그다음에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만 신고 대상으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견 없으면……

○이완영 위원 아니,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박성호 의원안은 수영장 및 유원시설 내의 유기시설은 타 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법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그것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이완영 위원 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다 제외했고 대폭 축소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권성동 지적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하나 위원 저는 오히려, 요새 우리 대기질 관리 같은 것 할 때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사실상 아이들이 요새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실제 수영장 이용하듯이 너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파트 이런 데 들어 있다고 해서 규제를 안 하기는 좀 무리…… 그러니까 빼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논의되면서 너무 많아지면 관리 자체가 안 되면서 방치되지 않느냐,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면……

물놀이가 대개 공개적으로 물놀이를 인정해 주는 시설이 적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동네에 있는 것은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어린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하나 위원 아니, 요새 고급 아파트인데 거

기에 바닥에서 솟는 분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까르르하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질관리를 안 한다는 게 저는, 다른 규제에 비해서 오히려 너무 풀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법을 만드는 상황에서 그 취지에 부합한가 묻고 싶어서……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맞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을 만약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이러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안 짓는 쪽으로 가 버리면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니냐……

○**장하나 위원**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안 지어야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그래도 확대를 이번에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고 좀 경과를 보는 게 오히려 나올 것 같습니다. 관리가 실질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전부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요, 공공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다 넣는 건데……

○**장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지는 않고요. 일부 고급 아파트의 경우니까 오히려 규제 안에 넣는 게 맞고, 수질관리를 안 할 거면 그것은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들은 거기서 물 나온다고 성인이 가지는 않고 보통 애들인데 너무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고 엄마들이 막지 않고 그러면서 그 수질이 관리 안 된다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그럴 바에는 애들이 안 가도록 그 시설이 없어야지 있고서 관리 안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문제 되니까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하려는 의도였는데 아까 우리 국장이 설명했듯이 오히려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대부분의 위원님도 수정의견으로 하자 그러니까 수정의견으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하나 위원** 아니,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시겠지요, 바닥에서 분수 나오는 것?

○**소위원장 권성동** 규제는 한꺼번에 확 확대하면 안 되고 조금조금씩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단계적으로 하면 돼요.

○**우원식 위원** 규제는 눈 딱 감고 한꺼번에 확대 버려야 돼.

○**소위원장 권성동** 규제를 너무 많이 해, 지금. 환경부 법안이 전부 규제 법안이야, 보면.

○**이인영 위원** 당연하지.

○**우원식 위원** 환경부가 규제하는 데야.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지금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되는 판에 말이야, 규제법 만들어 가지고…… 별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없어, 지금.

○**우원식 위원** 환경부는 원래 규제하는 데야

○**소위원장 권성동** 규제법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원식 위원** 다 규제해야 돼.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영장 가듯이 막 뛰어 들어가는 분수들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우원식 위원** 그렇지 심각한 문제야, 그것.

○**장하나 위원** 그래서 이런 규제를 안 할 거면 아이들이 못 하게, 그러니까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놀이형일 때는 수질관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분수로만 할 거고, 애들 정말 못 가게 막아 놓을 거면 수질관리를 안 해도 되지요. 아파트에 그런 분수 만들어 놓고 애들 못 들어가게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 물놀이형이 아닌 거잖아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물놀이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라서……

○**최봉홍 위원** 공공은 다 해당하잖아요?

○**장하나 위원** 예, 공공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청광장 이런 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봉홍 위원** 아파트 광장, 이래도 공공 아닌가?

○**이인영 위원** 아니, 법의 취지가 조금 다른 거예요.

○**최봉홍 위원** 수백 가구가 쓰면 공공이지, 해석하기 나름이지.

○**이인영 위원** 주요 공공시설로 해서 애들이 뛰어 들어가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하나 위원** 아, 공공기관이 설치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부연 설명을…… 위원님, 저희들 법 중에서도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데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라도 어린이놀이시

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은 규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이나 아파트나 할 것 없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 데, 그 놀이시설 한쪽에 물이 되어 있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그런 데는 들어갑니다.

○**장하나 위원** 아……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것 이런 것들만……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보류하고 더 논의해 봅시다, 일단.

○**우원식 위원** 그래.

○**최봉홍 위원** 통과됐으면 좋겠네.

○**이완영 위원** 금방 통과되겠습니다.

이해 됐어.

○**최봉홍 위원** 마가 있네, 수정의견에 마가 있네.

○**장하나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보류하고, 이 법 전체를 다 보류하고 그러면……

○**우원식 위원** 다음에 해.

○**최봉홍 위원** 7번, 우원식 의원안.

○**이완영 위원** 이것 아까 보류했는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소위원장 권성동** 보류했으니까 나중에.

○**우원식 위원** 아니, 이 좋은 걸 왜 보류하자고 해.

○**이완영 위원** 오전에 똑같은 것 보류했잖아.

○**우원식 위원** 이것 보류하지 말고 해 줘야 된 다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무 생각 없이 보류해 가지고 오케이 해 줬어.

○**우원식 위원** 아니, 나 아까 오케이 안 했어. 해 줘야 된다고 그랬지.

○**이완영 위원** 그런데 진짜 자기 회비도 갖고 민간단체를 해야지 운영비까지 정부나 지자체에 다 대달라 하면……

○**우원식 위원** 자기 회비들 내지.

○**이완영 위원** 운영비 달라는 것은 회비 없이 하겠다는 건데……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을 허용하는데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제한을 합시다. 운영비의 3분의 1은

협회에서 부담하고 3분의 2는 보조금을 받든가, 전체 운영비의 3분의 1……

○**은수미 위원** 1 이상을 넘지 않는다.

○**소위원장 권성동** 절반 이상을 주지 못한다, 이런 제한 규정을 달고 뭘 해 줘야지……

○**우원식 위원** 그렇게 달아서 해 주지.

○**소위원장 권성동** 앞에 계속 이게 몇 개가 있으니까…… 오늘 2개지요?

○**이완영 위원** 두 번째야.

○**소위원장 권성동** 이게 세 번째야. 또 있어요.

○**이완영 위원** 다음에 또 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앞에 또 있었어.

○**이완영 위원** 앞에 2개 있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우원식 위원** 이게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돈 내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미국만 해도 렛츠 기브 퍼센트 퍼센트 무브먼트(Let's give 5% movement)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 내기 운동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공익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공익성을 인정 안 하면 모르지만 거기에 사업비를 주는 만큼 공익성이 있으면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거라고.

○**소위원장 권성동** 관리가 안 되니까……

○**우원식 위원** 표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것 그래도 총액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막 줄 수가 없어요.

○**이완영 위원** 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반대토론을 드리면, 우선 저도 지역에 그런 단체가 많은데 운영비를 하나도 안 내고, 법대로 수정하면 운영비 100%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고.

두 번째로 이게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공익 목적으로 활동 안 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정치활동 하고 있고. 오히려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활동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정말 저는 못마땅합니다.

○**최봉홍 위원** 처음 만들 때는 회비로 해 놓고 조금 지나면 전부 지원받아 가지고……

○**우원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 정도로 기준을 둔다거나……

○이인영 위원 보류하고, 일괄적으로 나머지 한 꺼번에 묶어서 처리하자고요.

○우원식 위원 이것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최봉홍 위원 세 번째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일단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의사일정 29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보류가 됐는데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시45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9항까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4건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거는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당시에 야당 위원님 중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반대 의견 표시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류돼 온 사안입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논의 경과와 쟁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과 6월 16일 두 차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6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

았고 2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수립·제출을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회하기로 하였고,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규정 삭제하는 문제도 정부에서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과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규정 삭제하는 사항, 그리고 기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거의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근거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였는데, 236쪽의 미합의 사항 두 가지, 관거의 관리 규정 삭제에 관해서는 배수관거 관리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관거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금강 하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한강에서와 같이 상하류 간 물이용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간사님께서 야당의 정리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 배수관거 문제가 지금 정리가 안된 거 아니에요?

○우원식 위원 하수관거는 삭제하고 배수관거는 남겨 두고, 그런 정도로 하면 이거는 수용할 수 있어요.

○이완영 위원 하수관거하고 배수관거 두 가지인데……

○우원식 위원 하수관거는 중복 규제가 되니까 그거는 빼고 배수관거는 여기서 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수관거는 존치하고……

○이완영 위원 좋네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조문 정리이고, 배수관거는 우려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그

거는 현행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대청호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대청호는 정부안으로 좀, 저희들이 이게 특별……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야당의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대청호? 그렇지요?

○이인영 위원 정부안을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그러면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아니지, 대청호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안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안 들어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합의 사항의 관거 부분 중에 배수관거는 그 대로 살리고 하수관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문제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총덕 예.

○우원식 위원 금강호 행위규제 완화하는 거는 우리가 죽 설명듣기로는 다른 중복적인 규제가 있어서 행위규제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떨까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금강법 만들 때 총량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총량제를 도입하면 총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팔당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팔당이 들어갔는데 동시에 법을 추진 안 하다 보니까 금강이 빠졌어요. 그래서 금강지역은 왜 우리는 빨리 안 해 주느냐, 이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 지역의 특별대책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팔당도 있고 금강이 있는데 팔당은 미리 반영이 되고 이거는 이번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통제를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부안이 여기 와서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그거는 안 되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공포 후 6개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공포 후 6개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거는 금강법입니다. 지금 의결한 거는 금강법이요.

그다음에 한강법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부가 제출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7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래 수정의 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시다만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과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죽 한 번 검토를 하자고 그래서 좀 미뤄 놔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에 같이……

○소위원장 권성동 야당에서 병합하는 거로 했습니까?

(「안 하고 이것만……」 하는 이 있음)

아, 병합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걸로 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7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57)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60)

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53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0항에서 제43항까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역시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71쪽입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

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 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해서 인증규정 위반 등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인증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274쪽, 임의설정 등의 행위 금지 및 벌칙 신설 사항입니다.

‘임의설정’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설정 행위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기능저하 또는 작동 중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임의설정의 정의 규정이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해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 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77쪽, 양창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냉매 판매량 신고 신설 등 사항입니다.

냉매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자원부는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고, 환경부령 개정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80쪽, 마찬가지로 양창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냉매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부장관 등이 냉매를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냉매의 관리 등의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냉매의 관리와 회수·처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이를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냉매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282쪽의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감시 등을 위해서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봤고요.

다음은 285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신설입니다.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대행업,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법규에 신설하고 등록제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현행법이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등으로 하여금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조치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1년 이상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방지시설 설치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92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법 제 58조제3항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294쪽 이하의 기타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도 내용이 많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1쪽에 대해서 환경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규정 위반의 과징금 상한액 10억을 100억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개정안 수용합니다.

○이완영 위원 의견 드릴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 저는 상한액을 없앴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과징금이 매출액의 3% 이내잖아요, 매출액의 3%?

이번의 폭스바겐 사건을 봐도, 제가 국토위에서도 조금 내용을 봤는데 굳이 이게 상한액이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본래 상한액 한 것이 국토부 관련 법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억 했다가 이번에 300억으로 올리는 걸 그 쪽하고 좀 맞춰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10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지요.

○이완영 위원 미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돈을 물리고 있는지. 지금 자동차 업계가 국내 자동차 보호만을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이거는 정부 내 입장들이 많이 올라가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업계라는 게 여기의 자동차 업계가 아니라 수입차 업계 이런 걸 다, 이 친구도 그런 의견 아니에요, 자동차산업협회라는 거의 의견이? 이게 수입차 업계도 포함된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환경부하고 입장이 다르지만 관련 산업을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00억까지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 되면 수입차보다는 국내 업계에 물량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만일에 이거보다 더 올리게 되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배출가스는 이번에…… 다 알잖아요. 이게 인증받지 않은 걸 쓰거나 인정받은 거하고 다르게 사용한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 위반행위 자체가 우리가 법안에서 보듯이 인증된 걸 써야 되는데 인증 안 된 걸 썼거나 인증된 거와 다르

게 가라로 썼거나 이 얘기 아니에요?

○이인영 위원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하게 우리가 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소위원장 권성동 법이 너무 강하……

○이완영 위원 아니, 강해도 이거는 규제하는 건 아니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과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그건 그런데, 그래도 지금 10억 원이 한도인데 100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10배를 갑자기 올려 가지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의 의견 한번 들어 봤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100억까지는 산업부에 협의를 했고요. 만일에 이게 변동이, 더 올라가는 문제는 부처 내의 입장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적인 측면 또 실무자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도는 뒤야 될 것 같아.

○이완영 위원 여기 보세요. 미국, 과징금 이번에 21조까지……

○소위원장 권성동 미국은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법체계하고 우리 법체계를 똑같이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완영 위원 아니, 징벌적 보상이 아니고 과징금이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미국의 과징금이.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마찬가지로요, 과징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인영 위원 참 좋은 얘기를 하신 건데……

○이완영 위원 이거는 자동차산업의 보호 문제가 아니라니까.

○최봉홍 위원 자기 개인 소송을 해서 그 보상을 제외하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정부 측은 나갑니다.

○이완영 위원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는 데 우리가 규제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자기들이 소송으로 가는 거는 소송으로 가져가고 정부가 제재하는 거는 여기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최근 3년간 과징금 상한액 부과 사례를 보면 쌍용자동차만 128억이야. 나머지는 다 3억, 2억 4000, 2억 6000, 6억 2000 이래

요. 그래서 국내 제조사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적정하게 하고, 상한액을 두고 그렇게 합시다. 상한액을 두고 정리하지요.

그다음에 274쪽 2항.

○환경부차관 정연만 임의설정 등의 행위금지 및 벌칙 신설에 대해서 이석현 의원님이 안을 제시하셨는데……

○이완영 위원 소수의견을 속기록에 반드시 달아 놓으세요.

○이인영 위원 제 의견까지 같이 달아 주세요.

○우원식 위원 저도요.

○소위원장 권성동 27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께서 검토보고에서 48조 인증과의 관련을 봐야 된다고 보고드렸는데, 지금 우리 법에서 임의설정을 했을 경우에 과징금하고 인증 취소하는 행정행위는 있는데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든지 아니면 48조 인증에 가서 넣든지, 입법기술적으로 기법의 문제 아니냐, 그렇지만 어디든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수석님, 검토보고 요지는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지금 현재 임의설정이라고 해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작, 이번 폭스바겐같이 했을 경우를 임의설정이라고 봐서 거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표현을 임의설정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행법 내에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인증받지 않고 제작한 차라는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설정하면 법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입법기술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완영 위원 수석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인영 위원 다른 조항에 ‘조작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과징금 규정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인증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규정은 있고 형벌 규정에서도 인증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차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쉽게 말해서 사각지대를 살리는 구면.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래서 임의설정이라는 조항을 정의 규정을 새로 뒤서 하면 오히려 혼란을 주니까……

○이완영 위원 임의설정 쓸 것 없이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자, 수석님이 이 말이구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그 조항에 맞춰서 입법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수정의견을 제시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어제 너무 늦게까지 정부하고 그것을 협의를 하다가……

○이완영 위원 쉽게 말해 이 말 아니에요? ‘임의설정’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이런 말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안을 지금 만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쯤 심의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은 조금 보류해 놓을 테니까 입법기술적으로 빨리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입법기술상 문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넣어도 되고 인증 조항에 넣어도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까 인증받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다른 조항에 이미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행 조항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하거나’

그 조항에 넣으면 되겠네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조항에 넣자는 게 수석님 의견이시고, 우리는 용어 정의에서 이쪽으로 빼도 이것은 되거든요.

○이완영 위원 임의설정이라는 어려운 말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입법기술의 문제입니다.

○이완영 위원 수석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기 쉬우면 되지요.

차관님,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니까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국회에서 입법기술의 문제는 해 주시면 저희는……

○이완영 위원 임의설정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또 들여다봐야 돼요.

보완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냉매 판매량 신고 신설 등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칙까지 해서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부가 일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산업부와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그 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산업부하고의 관계는 해결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산업부에서 적용하지 않은 게 뭐 있나요, 냉매에 있어서?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수소불화탄소하고 염화불화탄소는 산업부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 수소염화불화탄소라고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받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활용할 것이고 안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산자부 법에 넣으면 안 돼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산업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성층권 파괴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들어가는 물질은 성층권이 아니고 지구온난화 물질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물질 성상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법안 자체들이 대체로 규

제법안이잖아요? 그다음에 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법이니까……

수석전문위원, 법률 검토를 할 때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으세요. 그래야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것이지요. 보니까 오늘 거의 관련 부처 의견을 하나도 안 받아 왔어요. 안 받고 그냥 올립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우원식 위원** 여기 협의했네요.

○**이완영 위원** 협의했는데 냉매 이것 하나 가지고 오존층 보호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받고 또 환경부에서 받고, 그러니 정부가 욱 얻어먹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법은 성층권 관련 협약 때문에 물질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따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따로 정의된 물질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장 좋겠는데 물질 특성상 그쪽 법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보고를 받아서 감축대책을 만드는 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산업부 자료만 갖고는 파악이 안 돼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다 안 됩니다. 물질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기업들은 산업부에 따로 내고 저기에 따로 내고, 차라리 두 기관이 보고받는 양식을 통일해서 환경부에서 받든 산업부에서 받든 하나만 제출하도록 법을 다시 조정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왜냐하면 부처는 자기들 편한 대로 여기서 내라 저기서 내라 하고, 기업은 만들어서 양식을 달리해서 이쪽에 하나 내고 또 이쪽에 내면 기업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예요? 또 다른 규제지요.

그러니까 양 부처가 논의를 해서 하나의 통일된 양식을 제공하고 한 부처에서 받아서 다른 부처에 뿌리는 그 형식을 취하란 말이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산업부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공동고시를 만들든지 해서, 취합을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산업부가 하든지 공동으로 한번 논의에 부처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환경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업 하는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것 아니에요, 만날 정부에서 이것 내라 저것 내라 하면?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기업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부 취해서 싹 다 공동고시를 해서 받아서 공유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거지요. 이상적인데 관련 법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법에 연계되어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산업위하고 환노위하고 연석 회의를 하더라도 그런 것 통일시켜 줘야 된다고요.

○**최봉홍 위원** 산자부에 넣을 때 그 서류를 그대로 환경부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산업부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지요. 자기들 관리 안 되는 것을 받아서 관리해서 주고 그러면 귀찮으니까요.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데 남의 부처 것 받아서 다시 주고 하기는 쉽지 않으니, 공동지침을 만들어서……

○**이완영 위원** 산자부가 말 안 들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예 이번에 같이 받도록 우리가 여기서 법으로 정해 버려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산업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기업한테 절차 문제니까요.

오존층 보호법에 의한 것과 동시에 받는 것으로 정하면 되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해서 공동지침을 만들어서 한 번에 하는 것으로 하위법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같이 하는데, 안 그러면 산업부가 근거 없는 것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산업부에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그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우리 법 통과 부대조건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부대조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280쪽.
 ○환경부차관 정연만 개정안 수용하겠습니다. 실태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이완영 위원 이것은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검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나요? 없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일부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어디예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만일에 보고와 검사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법을 하면 그런 것도 넣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그런 것은 쓰옥 빼 가지고……
 ○이완영 위원 기존에 있는 조항이니까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기존에 있는 조항이라도 이 조항하고 연관성을 우리가 법을 다 안 보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282쪽.
 ○환경부차관 정연만 과학원에 환경위성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기상위성 하고 다른 것을 띄운다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미래부에서 총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든답니다. 왜냐하면 레일을 다시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서, 오히려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전문화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나와서 환경위성은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사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천리안 이런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미래부·기상청은 기상·해양 관측이고,

그다음에 기상위성……
 환경부에서는 따로 띄웁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하나의 위성에서 이거 다 안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게 안 된답니다. 정부 내에서 논의를 몇 번 했습니다. 미래부에 담아 놓고 정부에서 띄워서 가져가는 것으로 했더니 그게 산출해 보니 비용이 더 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특화해서 부처마다 몇 개 부서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지금은 상업위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삽니까? 우리가 환경위성센터도 없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예, 없습니다. 환경위성 같은 경우는 띄우면 다시 센서로 해서 전파를 발사해서 받는데 지금 있는 위성들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 우리는 외국에 있는 상업위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안보든 국방이든 필요한 부분은 돈 주고 많이 사거든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환경 쪽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고, 그것이 저희 한국 쪽 같은 경우는 커버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5쪽 6번은 앞의 법률안과 내용이 같은 것이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운영, 이거……
 ○환경부차관 정연만 288쪽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휘발성 유기화합물.
 ○환경부차관 정연만 여기 저희들이 지금 검토 보고에서는 아까 전에, 저희들 지금 개정안에 2년으로 했습니다, 1년으로 되었다가. 왜냐면 저희들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하고 새로이 규제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이전에 저희들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가 9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는 이거 하면서 경과조치를 한 3년 두었더랬습니다. 3년을 줘도 사실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1년 더 유예까지 뒀는데 그때 유예 1년 주면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 규제지역을 설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 때문에 규제지역을 설정하기 쉽지도 않고 또 1년 해도 만약 규제지역 설정하면 또 연장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년으로 하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설정을 추가로 하더라도 시행계획을 만들 때가 한 1년 걸리니까, 그러면 그 1년 하고 2년 하면 한 3년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으로 개정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1년 내에는 방지시설 설치를 못 한다는 얘지요, 현실적으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못 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법을 강요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입법적으로 좀 기존 시설하고 신규로 지정되는 것하고 구분해 주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가 완전히 탁상행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경과조치를 두면서 조금 미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정되는 것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좀 추가로 신청할 지역의 필요가 생기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이게 제가 보니까…… 잔소리 하나만 하면 말이지요, 환경부 업무가 굉장히 기술적인 업무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법문 내용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다음에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 안 한 상태에서 탁상행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법이 적용될 때는 굉장히 저항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려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장을 좀 더 나가서 현장의 실태

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령, 더구나 이게 환경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되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많이 그렇습니다. 기술적이어서.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 만들 때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그러면 여태까지 이거 반발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게 반발이 없었던 게 추가로 지정한 지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법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6개 지정해 놨던 그 지역에만 적용했는데 최근에 그런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가하려면 이게 1년만 해야 되니까, 이전에는 4년씩 주고 1년 되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지정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이건 없으시면 2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292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여태까지 근거 법률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정부 예산사업하고 뭐 할 때 법적 근거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위원장 권성동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도 아닌데 뭐.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웬만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에 근거를 많이 두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하고 있어요, 지금.

○이완영 위원 하고 있어요? 자동차 사는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충전시설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많이 되어 있나요, 전국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중인데.

○**소위원장 권성동**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지요. 전기자동차는 아직 부족하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337개 정도가…… 아직 많이 해야 됩니다, 대중화하려면.

○**소위원장 권성동** 수소전지시스템은 하나 했나요, 지금?

○**환경부차관 정연만** 3개 정도 공고 후 정부 측돈 줘서 했고 이전에 시범사업할 때에 일부 시험 수준에 또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다음에 294쪽, 정부안 기타 개정 사항.

이거는 뭐 검토를 안 해도 돼요?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그러게.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전산망,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전산망이 지금 없습니까? 이것도 법적 근거 만드는 거예요?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망 저희들이 해 가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번 죽 보십시오.

그러면 이 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3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 들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섯 사람밖에 안 되네.

아, 장하나 위원 얼굴 가려서 안 보였구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보면 장하나 위원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기상산업, 44항과 45항은 5시 반에 기상청 관계자들 오라 그랬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봉홍 위원** 이거는 시행하고 있는 거를……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11항에서부터 13항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아까?

정부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까, 수정의견을?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오전에 화학물질관리법에……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부 수정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안 칸 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53쪽에, 이거는 53쪽이고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우리 시행규칙에 있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한다.’ 해 가지고 학위 소지자라든지 자격 요건이 이제 다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격 요건이 법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환경부령으로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오른쪽에 보면 환경부 수정안에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박사학위, 죽 이런 것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저희들이 2호, 23조의3에 1항에 2호가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가 ‘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이 안에 대해서 별 문제없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특별한 문제없는 거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각 호를 없앴으니까 그런 것도 없애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됐어.

○소위원장 권성동 조문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겠네요. 오시면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때문에.

4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계속)

(15시32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부터 50항까지 최봉홍 의원, 전병헌 의원, 이윤석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 소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 중에 정리된 부분도 있고 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늘어져 왔는데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될 때가 왔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많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견을 좀 좁혀 주시고 우리가 자원을 선순환시키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드는 것이 우리 환경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논의를 해 주시고.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논의 경과 및 쟁점, 특히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야당의 의견 그리고 또 우리 여당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자료 중에서 정부안이라고 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여기서 기본법과 촉진법의 문제 그리고 폐기물 중 자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개념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법과 촉진법의 문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법률체계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법안으로는 폐기물 관리가 어렵고 환경오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환경보전과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설명한 거 갖고 심의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니,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그런, 논의되었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기본법과 촉진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은수미 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정부안, 최봉홍 의원님 안하고 지금 이완영 의원님, 저희 쪽 전병헌·이윤석 의원님 안이 좀 다른데, 전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되려면 사실은 환경법만의 문제가 아닌, 예를 들어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좀 다시 봐야 돼서 전 오히려 법 명칭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고요. 실제로 현재 법적 내용을 보면 촉진법이 맞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개인은 그런데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은수미 위원 야당의 의견도 약간 나눠서서……

○소위원장 권성동 나뉜다?

○은수미 위원 예, 약간 나눠어서, 이견…… 그래서 제가 개인적 의견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완영 위원님, 뭐……

○이완영 위원 저도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법안 제출자니까.

○이완영 위원 예, 제가 발의한 의원님들 다 의견 좀 나눠 봤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자원순환

사회가 최초로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뭐 기본법이든 개별법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가야만이 현재 있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법이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자순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재활용되고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는 그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병헌 의원님도, 이거 저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기본법으로 가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 하여튼 법률 명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완영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법은 뭐니까? 환경부는 뭐로 보고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기본법 성격은 사실은 분야별로 관련된, 모법의 출발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출발했으니까 그게 이제 뿌리법이고.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이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 자원순환사회법이기 때문에 법률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중요한 거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논의해서 결론을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난번에 문제됐던 부분, 소위 말해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의견 정리가 됐습니까?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아니요, 야당도 지금 다 정리가 된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소위원장 권성동 대체적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걸로……

○은수미 위원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다 대부분 정리가 된 거지.

○은수미 위원 그런데 다 정리된 건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간사님이 오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저는 원래 약간 더 정부안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으셔서……

○이완영 위원 순환자원의 정의 이거 얘기입니까? 순환자원의 정의?

○은수미 위원 예, 정의. 폐기물과 순환자원. 그래서 조금씩 다른……

○장하나 위원 저도 제 의견 말씀드리면 저는 최봉홍 의원님 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그거는, 두 분의 의견은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인영 간사님 좀 모실 수 없나? 오늘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완영 위원 전화해서 오시라 그래요.

○은수미 위원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아까 저희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완영 위원 아니, 순환자원의 정의가 왜 문제되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왜 안 되는데?

○은수미 위원 아니, 순환자원을 무엇으로……

폐기물의 범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하고 순환자원의 정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를 누구는 순환자원으로 쓸 거면 순환자원으로 아예 그런 것은 보자, 그리고 그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폐기물로 일단 보고 거기에서 순환자원으로 갈 것을 정부가 검증을 해 가면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확실히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완영 의원님 안하고 최봉홍 의원님 안도 완전히 달라서……

○이완영 위원 저는 낸 것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이나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부 법안에 대해서 저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인정해 가지고 폐기물에서 순환자원 넘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현 시점에서 폐휴지, 폐지, 폐금속 이런 것들 몇 가지는 이미 순환자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굳이 인정 없이 우리가 이 법에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가는 게 좋겠다……

○장하나 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좋지요.

○이완영 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저는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장하나 위원 그러면 수정된 안이 있거나 해야 하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보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개별 무슨……

○은수미 위원 그런데 그 예외규정을 법적으로 두자는 말씀이지 않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외규정을 법적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완영 위원 예외가 아니라……

○은수미 위원 예외규정이지요, 그게 예외규정이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운영상에서 거의 문제가 없는 폐휴지나 폐지라든가 폐유리병, 이런 것은 그렇게 운영상에서 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재활용할 때 재활용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순환자원, 더 확대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자원으로 가기 때문에 자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그냥 인정 안 하고 신고를 해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야당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이것 잘못했다가 큰일 나지 않느냐’ 하는 그 기준,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부안이 더 합리적, 더 거기 가까운 거예요, 지금.

○최봉홍 위원 그러면 야당이 정리가 안 됐으면 오늘 다룰 수 없네?

○은수미 위원 저는 최봉홍 의원님 안이요. 시간을 좀 주시고, 오시면 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한번 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시면 자유투표 하지 뭐, 모처럼 이런 것은.

○은수미 위원 그러지 맙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일단은 보류하고.

○은수미 위원 예, 일단 이것은 좀 보류하고 순서를 바꿔서 하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이 내부에서 논의할 때, 평상시 우리한테만 목소리 높이지 말고 거기서 좀 목소리 높여요.

○은수미 위원 저는 정부·여당에게만 목소리 높입니다. 왜 내편한테 목소리를 높입니까?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한 사람이 모자라서 결의가 안 된다 아닙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 10분 쉽시다, 오라고 하고. 설 때도 됐네.

○소위원장 권성동 4시에, 15분 남았으니까 조금 이따, 하나 더 보고.

○이완영 위원 좀 쉬었다 하십시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조금……

○이완영 위원 좀 쉬어야지요, 4시에 하도록 하고.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정회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의석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51항~54항까지 장하나 의원, 전정희 의원,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전력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사가 보류됐는데 우선 경과부터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고 정부에서 부처 합의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합의가 됐으면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부처 의견 조정 결과가 나오면 정부로부터 다시 보고받은 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지난 회의 때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정부부처 간의 통일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장님, 자료를 깔아드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보고하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1쪽은 추진 경과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관계부처가 용역을 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부처 간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 조율된 게 전력수급계획 등 추가로 19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소위원장 권성동** 몇 개를 추가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19개를 추가를 해서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대상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2쪽에 보시면, 순증은 19개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상계획 확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력수급계획하고 수자원장기계획 등 환경 영향이 큰 29개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같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중간에 중복되는 이런 계획들 10개를 제외해서 순증이 19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상반기 중으로 정부 내의 입장을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서 부처 간에 많이 선진국 수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에 제시된 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해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입장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 대상계획을 5년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상계획 전체를 놓고 스크리닝을 해 가지고, 그리고 계획이 단계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모든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티어링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계획을 제외한 그런 딱 필요한 계획을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계획수립기관의 책임자, 담당자를 해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정보 공개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계획 자체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할 때 보완·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런 보완·조정

요구를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평가법에서 평가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의무를 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최상위 같은 계획의 경우에는 정략적 평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평가를 한 8개 정도, 계획은 입지나 사이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식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쪽에 보시면 113개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처별로 청색으로 줄이 그려져 있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되는 겁니다. 검은 글씨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 3페이지에 주로 그런 계획이 많고 4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든지 댐건설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빠졌냐고 좀 의아스러울 것 같아서 그 뒤에 한 페이지로 그림으로 된 게 있습니다. 추가 별지로 저희들이 깔아드린 것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 분야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서 댐건설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 지하수관리계획 이렇게 죽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위계획으로 댐건설계획, 하천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고 댐건설장기계획이 수자원계획에서 댐만 빠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입지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할 때 댐에 대한 계획을 해 준다면 댐건설기본계획 할 때 입지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거를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연구용역에서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완영 위원** 상위계획에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중간 또 상위 계획은 생략을 하고 실제로 사이트가 나오는 거를 하게 되면 중복을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 교통망 분야에서도 보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전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거를 빼고,

개발계획에 들어갈 때 또 다시 입지가 나올 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기존에 안 됐던 게 추가가 되고 이번에 제외됐던 것은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관계부처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조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추가로 한 페이지 나눠 드린 것이 위원님들이 추가로 하자고 제시된 계획 중에 일부는 그런 티어링에 따라서 상위계획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계획 빼고 하위계획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법안에 반영하면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그걸 좀 더…… 의원님들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 내용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면, 평가대상계획 확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있지만 의원님 발의한 안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대상계획 주기적 갱신절차 도입 라든지 정성평거나 주민 의견 수렴은 정부 합의 안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의원님이 평가대상 외에 추가로 개정안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계획 재협의 신설에 대한 조항이 있고요.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시에 재평가하는 조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변경 협의하는 이런 조항들이 의원님들이 추가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거는 의원발의를 정부가 어떻게 본다든 겁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완영 위원 어렵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리고 또 쟁점이 됐던 것 외에 정부 법안 중에서 전략평가항목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 전략항목을 다 할 때는 전 항목을 다 하기 때문에 공개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사업 승인 취소 또는 승인 지연 이후 5년 동안 안 하면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취

소되었을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을 두는 것하고 또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5년 이상 지나면 승인 지연된 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점 이 점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의 조항은 보완·조정 횟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환경부가 보완·조정만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완·조정 횟수를 2회까지로 하고 보완이 안 되면 바로 반려시켜 버려라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런 조항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관련 부처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개발계획 과정에서 환경 평가법과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똑같은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준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그 계획으로 같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기술 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조정하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하신 내용이 반영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서 대응적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렵게 조율한 안 만큼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의 이 합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우선 이인영 간사님이 대신 좀 말씀드려 달라고……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이인영 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야당에서도 거의 동의를 하는데, 단 협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오늘 소위 자료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 합의안에 대해서 입법 결과물이 굉장히 늦게, 지금 와서, 그래서 합의안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이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소위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이 이인영 간사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만 받고, 일단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니까 다음 회의 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은수미 위원 예.
- 심상정 위원 아니, 저기……
- 소위원장 권성동 예,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심상정 위원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정부 조정 안에?
- 소위원장 권성동 예,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 은수미 위원 약간의 의견 차이는 저희 내부에서도 있었는데……
- 소위원장 권성동 안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 은수미 위원 있었으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다음 소위에서……
- 심상정 위원 예, 소위에서 하지요.
- 은수미 위원 예.
-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55항에서 제57항까지……
- 은수미 위원 아니, 하나만 조금만 더요. 그와 유사한 게,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합의안을 가져왔는데……
- 환경부차관 정연만 아, 그것도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 은수미 위원 그것도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없어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 소위원장 권성동 다 하셨습니까?
- 은수미 위원 예, 됐습니다.

5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5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6시16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55항에서 제57항까지 김영록 의원,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 법안소위 때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자연공원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사항과 해안·섬 지역의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설치 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 중 심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왜 논의 중에 심사가 중단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거기까지만 하고 심사를 더 이상 안 하셨습니다. 해안·섬 지역 탐방객에게 탈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래서 많은 의견이 있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그때 같이 그 앞서서 의결된 사항이 동법과 연계된 국립공원공단법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는데 자연공원법에서 공단법안으로 이관될 사항이 있어서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국립공원공단법안은 의결을 하고 법안소위에 보류하였다가 자연공원법이 처리되면 함께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 의견 얘기하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안·섬지역 탐방객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시설이 필요해서 개정안에 넣었는데 그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 해서 그때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공원해상휴양지구도 사실 난개발을 방지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공원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접근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영순 위원님이 강하게 반대하셨나요?

○은수미 위원 저도 반대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은수미 위원님이 그때 반대를 하셨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반대하신 이유가…… 67쪽?

○은수미 위원 그렇지요. 67쪽이 핵심이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어디를 반대했지요?

○은수미 위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것, 이것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찾아오셔서 설명도 들었고요. 그건 감사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뒤의 다른 조항은 동의를 거

의 하는데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도 좀……

그때도 환경부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해상공원에 적합한 새로운 용도 지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는 저도 일정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이렇게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만들 경우 약간 대규모, 한 4·5층 정도의 시설을 집적시키자는 건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고 여기로 집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다 보면 원래 있는 것 그대로 있고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는 면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국토위 쪽에 확인해 보니까 국토위에 계류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상의 해양관광진흥지구라는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또 차별성이 없어서 이게 한꺼번에 도입이 되면,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도입하면 섬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저한테 여전히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아직도 동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이완영 위원 국토부의 해양관광 특별지구 검토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입장은 공원해상휴양지구가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이쪽에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부처간에 조율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조율 아직 안 했으니까 다음에 하든지 이걸 빼고 하든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거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줘야……

○이완영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미뤄야 돼. 더 국토부하고…… 국토부도 해양관광진흥지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 공원해상해양지구는 아무래도 조그마한 섬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작은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작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하는 거고, 동·서·남해안권 법에 들어 있는 거는 해양관광진흥지구라고 하는 큰 지구를 지정할 건데

공원구역 바깥에 대부분 하는 거고요. 그중에 불가피하게 공원구역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 비율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깃 자체가 다릅니다, 지구 자체가. 예를 들면 주로 해안가, 섬이라기보다는 육지의 해안가 같은 데 큰 진흥지구를 국토부에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완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섬도 들어갈 수 있겠지.

○은수미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최봉홍 위원 이걸 풀어 놓으면, 우리나라 섬이 한 4000개 안 됩니까? 무인도 보태서 4000개 되는데 그 섬이 전부 다 난개발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유가 돼서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난개발을 막아 보자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난개발을 막으려면 다른 곳에는 하지 못하게 하든가, 그걸 집적을 시킬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여전히…… 그것은 금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원래 있었던 것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지역이 뭐냐 하면 이런 장치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무허가식으로 난립이 되니까 이게 생기면 그런 게 통제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은수미 위원 통제가 안 되지요. 통제할 게 없는데 어떻게 통제……

○이완영 위원 차관님, 판단하세요. 지금 우리 시간도 없으니까 이 조항을 너무……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잠깐만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진행은.

○이완영 위원 아니,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이걸 굳이 해야 된다면 국토부 그거하고 비교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국토부 법은, 자기 법에서 우리 공원지역에 들어올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해상휴양지구 지정하는 수준으로 그쪽도 개발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은 입장 정리를 하고 있지요.

○은수미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국토부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때 환경부는 그냥 협의를 해 주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쪽 마음대로 하고 환경부도 또 하고, 그리고 기존의 것들은 통제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협의를 해 주는 정도인데, 이게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지금 서로 섬이나 해안 쪽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위원님, 공원해상휴양지구는 기본적으로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구 중에 하나고요. 공원구역 안에만 있는 거고, 해양관광진흥지구는 기본적으로 공원구역 바깥에 있는 지구인데 그중에 아주 일부가 불가피하게 공원구역을 침범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 지역 자체는 좀 다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대상지가 다르네, 보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개념은 좀 틀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걸 자연공원 내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원해상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자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를 규율하겠다는 법이니까……

○**은수미 위원** 안 그래요.

○**소위원장 권성동** 맞아요.

○**은수미 위원** 만약 그렇다면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왜냐하면 자연공원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대상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환경부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국토부 마음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정하는데, 다만 자연공원 내에 자기들이 지구를 지정하려면 이걸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그때는 협의해야 된다 그런 취지니까 분리가 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분리가 되는 거고, 이 제도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자연공원지구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개발을 하면 오히려 난개발이 안 되고 또 일반 관광객들 편의도 더 도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수미 위원** 아니,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는 환경부도 알아요. 제가 사진을 보고 물어봤으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잠깐만요. 섬이라든가 해안가에 있는 자연공원 내의 기존에 있는 집들을 철거할 방법은 없지, 그걸 매수하지 않는 한에서는. 다만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그 해당 지역을 개발하면 나머지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거 만들면 공원해상휴양지구 내에 숙박시설도 밀집시킬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예, 아주 작은 규모로 한 3~4층, 한 4층 정도까지로 제한을 하고요. 600㎡ 이하까지 부지면적으로 해서, 일정 지구 내에 그런 것들만 하게 되면, 지금은 섬 같은데 중에서도……

○**소위원장 권성동** 이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가 뭐야? 한번 알기 쉽게 얘기를 해 봐요, 국장이.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낡은 민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탐방은 하는데 요즘 수요로서는 별로 자고 싶지 않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다 자연환경지구입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지구는 처음에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1만㎡ 이상, 그러니까 큰 규모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은 것들은 못 만들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작은 규모, 600㎡ 정도로 풀어 줌으로써 작은 것들만 허용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 지금은 큰 숙박시설만 건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큰 숙박시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너무 낡아서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구 지정을 해서 거기에 소규모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을 경치 좋은 곳에 만들고 보트계류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과 레저시설이……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주로 숙박시설 쪽이구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할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있는 섬 중에서 대강 10~20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그 수요를 맞추는, 그러니까 한정된 지역만 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나는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은수미 위원** 저도 이것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을 이해한다니까요.

크게 숙박시설로 하는 것은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3층에서 5층 사이 펜션 정도의 규모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적시키겠다, 그러면 노후화되지 않은 새로운 시설이고 관리가 되는데, 제가 문제 삼은 것은 그 주변은 이미 노후화된 시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 사람들 뭐 먹고사느냐 그 얘기지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쪽으로 집적시키든가 관리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은수미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없이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 다 존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이게 제가 계속 애매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개발은 개발대로 되면서……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님 생각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결국은 지나치게 많은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 훼손이 더 심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기존 시설, 거기서 민박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터를 잃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몇 군데, 시범사업 대상지 같은 데를 찾아봤는데, 그런 데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마을들이 협동조합처럼 자기들이 어느 정도 투자해서 그쪽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인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방안이 진행된다면 외부투자 없이도 마을에서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서서히 줄여 가면서,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 것지만 이전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땅을 매입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고, 대신 허가를 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나는 땅 소유 현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섬의 원래 원주민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안 팔리는 땅도 팔 수 있어서 소득 측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완영 위원** 저도 한마디 합시다.

제가 환경부 취지를 보니 환경부가 왜 이렇게 개발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국토위에 잠깐 있어 봤지만, 국토부에서는 우리 국토 발전을 위해서 관광진흥촉진지구 이런 것도 지정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섬지역을 더 개발해서 관광객 더 오겠다, 이런 것을 왜 굳이 환경부에서 그렇게 신경 써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공원 관리할 때 지역사회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공원 보존하는 데 애로가 참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만도 많다 보니까……

○**이완영 위원** 이미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개발 안 해 주면 불만이 많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니까……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이 오히려 반대한다잖아요?

○**은수미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조그

마한 여관을 하는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자기는 영업 안 되니 더 걱정을 한다 이런 말도 지금 있다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사람이 안 오니까 지역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립공원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국립공원 지정했다고 사유지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가려면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보존행위를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난개발……

아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사들여서 까지 않으면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추가개발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민박하는 것들 개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민가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 주는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이완영 위원** 그런데 새로운 것 들어오게끔, 순수하게 민간인이 들어와서 장사하게끔 촉진한다 이 말이잖아요, 국장 설명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용자를 해도 되는데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용자는 개인 용자 차원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해 주기는 부담스럽고, 이것은 지역에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계속 억누르는 것만 하던 시대는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나쁜 것은 아닌데 자꾸 은 위원님이 반대하니까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다 국가가 사들여서, 이것을 돌릴 수 있는 재원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최봉홍 위원** 자료 63페이지 김영록 의원 안 보면 법안을 낸 목적이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게 공원이 됐을 때, 개발해 줬을 때 이런 형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 안 하고, 정부가 낸 공원을 만드는 내용하고 서로 상치 안 됩니까?

○**은수미 위원** 굉장히 상치되지요.

○**최봉홍 위원** 제가 알기로 남해안의 모 재벌이 바닷가 경치 좋은 데 수백만 평 땅을 사 났어요. 이거 통과되면 바로 차려 가지고 해 버리면……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것은 대통령령에서 공원해상휴양구역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최봉홍 위원** 그게 영이 있지만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못 막는다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견이 해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 참, 그리고……

보류는 하시고,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회도 안을 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게 되시나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내시게 되는 것인가요?

○**소위원장 권성동**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내야지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름으로 검토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권성동**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장하나 위원**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은수미 위원** 이것을 지금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나요?

○**은수미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한테 의견 조희가 왔어요?

○**은수미 위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소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조사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회부되어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직 검토도 안 했어요?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급한 것은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법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은 정부 법안으로 왔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셨듯이 정부 법안으로 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 법안으로 제출된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합니까?

○은수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나요?

○소위원장 권성동 일단 은수미 위원님 의견을 수석전문위원한테 전달하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여야 간사가 나중에 수석전문위원 안이 만들어지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59.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16시38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60항까지 장하나 의원, 양창영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완영 위원 반대하는 사유만 들어봅시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지난 회의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장하나 의원님하고 한정애 의원님, 양창영 의원님, 세 분이 공동으로 협의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이 협의조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쟁점이 된 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처음부터 이것을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됩니다, 조정안을.

○이완영 위원 새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다른 법에 동물 보호에 관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동물원에 관한 부분?

○환경부차관 정연만 동물원에 관한 것은 박물관법에서 하기 때문에 동물을 관리하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미비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동물원하고 식물원하고 같이 하려고 정부 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식물원 같은 경우에 부처 간에 워낙 민감하게 되어 가지고 합의 도출이 안 되고 동물원에 관해서는 부처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관한 법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취하고, 식물원은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어서 법을 정부가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봉홍 위원 동물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면허제도나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면허는 아니고 임의등록입니다.

○최봉홍 위원 외국에 동물원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동물보호법은 있어도 동물원법은……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동물원법은 EU 쪽 계열에 많이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동물원법이 아니고 지침이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지침에 따라서 법을 만든 나라들, 영국 같은 데가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장 위원님,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이지 싶은데요. 안 그래요?

○장하나 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시기상조예요.

○장하나 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제가 얘기할게요.

법안 3조에 관해서,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경우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감면되고 물품에 대한 개별소소비세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여러 가지 하는데, 법안 15조 동물복지위원회를 보면 동물복지위원회에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및 수족관 경영에, 이게 사유재산인데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경쟁 간섭이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물원에 관한 법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개인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율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되어서 피해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논의를 지금 하시지요.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견해에 저도 동의합니다.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 어렵게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진 데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꽤 오래……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 부처 간 의견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와서 설명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부처 간 합의된 의견을 나한테 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부처 의견을 들어볼 테니까……

국장, 왜 부처에서 합의된 안을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해?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것은 부처에서 합의된 안이라기보다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 동·식물원법 입법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한번 조정 결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입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소위에서……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에서 만든 내용의 법안

은 없고?

○은수미 위원 지금 장하나 의원님, 양창영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통합안 플러스 부처 간 조율한 내용 이런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하여튼 다음에 와서 보고를 들어보고 제가 한번 더 검토를……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장하나 위원님 말씀……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의견 말씀해 보세요.

○장하나 위원 제가 저번 회의 때 조정안이 있다고 해서, 조정안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다음 회의 때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회의 안건도 보면……

○소위원장 권성동 어디 있어요, 보니까 없는 데?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검토의견은 그 자료에, 지난번 우리 세 분 의원님께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그 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이완영 위원 검토보고서는 다 작성돼 있다 이 말이지요?

○장하나 위원 예, 지금 134페이지에 검토보고는 저와 한정애 의원님, 양창영 의원님 조정된 안에 대한 검토보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설명도 들어 보시고 논의를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기본적으로 환경부, 해수부 간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공동입법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단 정부의 단일한 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정부의견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기본적인 토론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또 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하나 위원님 얘기 듣고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하기로 할 테니까 오늘은 보류하고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16시47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61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법안심사자료 IV권, 1쪽입니다.

최봉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9월 25일 제안되었고, 상정은 2014년 11월 19일 날 상정되어서 소위에 회부된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고 전기·전자제품 및 재사용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사용업 및 수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사용업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권성동** 예.

○**최봉홍 위원** 이 법은 본 의원이 작년 9월 25일에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그동안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지금 앞에 내놓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과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면 국내는 제외하고 해외만 하는데 재사용 및 수출업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를 막았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서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 수출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재사용 시 종전에는 기업 로고를 떼도록 했는데 기업 로고를 붙여서 표시 제거 규정을 삭제하고,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자와 재사용업자 간에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해서 예외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는데 수정해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관련 부처하고도 국내는 아니고 수출의 경우에는 좋다고 이렇게 동의한 상태가 돼서 큰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 검토하고 이것도 다음주에 좀 하지요. 지금 이것을 받아 가지고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제가 이것을 봤는데 중고 휴대폰을 수집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보면 초기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경우에 성능 변조를 하는 바람에 제조사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요.

소위 말하는 수출업자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초기화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게끔 해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을 갖고 기기를 변경시키고 이런 행위를 누가 했는지 간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나 아니면 수출업자의 이것을 규율을 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다음 소위에서 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권성동** 그렇시다. 그러면 보류하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 주세요.

6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6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9)

6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2)

6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154)

6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476)

(16시53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62항부터 66항까지 권성동 의원, 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조문별로 보고를 드릴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몇 페이지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중에서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적용이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12조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제12조와 관련해서 신기술·신물질에 대해 사용 제한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분야별로 별도 법령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 제12조는 동 법 외의 개별 법령에 특정 신기술 및 새로운 물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동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국민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및 물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환경보건법의 주요 제정 이유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정 삭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 예측하지 못한 기술이 다른 법에서 혹시 빠지는 것 있는가 싶어서 규정이 됐던 건데 현재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항이라서 개정안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봉홍 위원 이의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 하고요, 삭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지금 개별 법령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다면 굳이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있어요?

○장하나 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개별 법령에서 규정이 없을 때 동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로운 위험, '신 사회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위험들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어서…… 가슴기 피해 문제라든가 예측 불가능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기존의 사고를 가지고 현재나 향후에 위험을 저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개별 법령으로 빠짐없이 규율이 가능합니까, 차관님?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법 개정이 늦어질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이것을 뭐 하러 정부안에서 제한 규정을……

환경부가 권한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왜 갑자기 개정안을 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쓸데없는 이중규제 이런 것들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에서 규제 혁파하라 그러니까 이것 지금 낸 것 아니에요? 이것 개정해서 규제 혁파하겠다고 제출해 놓고 어차피 국회에 오면 반대해서 통과 안 될 것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개별법에서……

○소위원장 권성동 차관님! 환경부에서 이것 폐지하겠다고 청와대에다가 보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보고한 사항은 아니랍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알아서 규제 혁파하겠다고 낸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알아서 중복되는 것을 좀 정리해 보자 해서 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총리실에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실무자들이 이 법 개정하면서 잡아냈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자체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감축했다’고 하는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국장?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예, 규제개선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 실적으로도 넣었을 것 아니에요? 실적되지도 않는 것 갖고…… 내가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서 이게 개선 계재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은 하여튼 기예처나 총리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처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규제혁파 한다는 것 내가…… 이것 실제 사례로 오는 것이 몇 개가 보여, 내 눈에. 오늘 환경부 법에 보니까 정부안 제출한 것 중에 말이에요, 몇 개가 보인다고, 여러 개가 보여. 이것 오늘…… 비서관,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라고.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 내가 언론에다가 공개해야 되겠어, 위에다가 알려주고. 지금 몇 개가 보인다고. 정리해,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 도대체…… 전부 까막눈이 앉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26페이지, 2항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6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후 정밀조사 실시 여부의 판단 기준인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 기준보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특정 인구집단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완영 위원 타당한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상. 그냥 타당하다고만 얘기하세요, 이의 있는 것은 이의 있다고 설명하시고.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안이니까 환경부도 동의 하는 거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아직 동의를 못 했네.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명령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동 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확인검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권성동 이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4항.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2쪽입니다.

어린이용품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라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금지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금지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이 검사기관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 검사기관이 없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없습니다.

어린이용품에 대한 게 뒤에 법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뒤에 빠져서 이번에 잡아 넣는 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여직까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막 유통시켰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공공기관에서는 했었거든요.

○**이완영 위원** 차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유해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뛰뛰는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요, 어린이용품?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있습니다. 물질 금지하는 것 말씀이지요?

○**이완영 위원** 그래.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유해성 있는 것은……

○**이완영 위원** 그게 지난번에 언론에 크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미포함 된 게 많다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해성 평가하면 시간이 걸리……

○**이완영 위원** 아니, 조사보다 이런 것 선진국에 비해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적지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보완하고 있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게 이제 인력과 돈이 필요한, 조사를 계속해야 그런 품목을 죽, 물품에 쓴 것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유해성 평가를 해서 이런 물질 지정을 지정해 가거든요. 그 지정을 확대해 갑니다.

그런데 유럽은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고 우리는 늦게 가고 있으니까 확대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과 바로 비교하면 우리가 적지요.

○**이완영 위원** 검사기관이 없더라도 글로벌 기준을 연구해서 바로 지정해도 되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계속 물질들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5항.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6쪽입니다.

양창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여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인증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환경안심시설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증 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시설 소유자로 한정할 경우 국공립 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장에게 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자구, 문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인증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환경보건법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내용을 어린이 활동공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등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신 것의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8쪽에 보시면 제23조의3제2항·제3항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필요해서 인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수미 위원** 삭제를 한다고요? 2항·3항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2항·3항.

이것은 인증을 받고자 사람이 자기 브랜드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니까……

○**이완영 위원** 인증만 해 주면 된다 이거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요, 환경부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항, 환경보건센터의 역할 확대 및 운영기간 지정.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1쪽입니다.

정부안으로서, 확대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의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5년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기간을 지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센터의 역할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은 센터별 추진사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5년의 범위에서 재평가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평가의 주기를 센터의 운영기간에 맞추어서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반영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7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5쪽입니다.

양창영 의원님하고 정부안입니다.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 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및 환경부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양창영 의원님 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료 채취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은 이에 대해서 어린이용품의 시료 채취까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료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범위가 정부안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안에 대해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검사기관에게 수수료 단가 결정의 자율성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단가를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님 안은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자율성은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수수료 단가 책정 자율화로 인해서 수수료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수석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어느 안으로 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정부안, 좀 제한적인……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정부안에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항 부칙.

시행시기를 이것은 6개월 후부터……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6개월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은 6개월 후부터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또 한 분이 안 계시네, 한 분 가시면 들어오시고, 보류했던 것 방망이 두드리려고 했더니……

정리 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됐으니까 정리된 안대로 대안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방망이 두드리겠습니다.

6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17시10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에는 의사일정 67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0쪽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12월 2일과 금년 6월 16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화학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 대처인데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화학사고를 포함해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말씀하

시기 전에, 제가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좀 우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정부하고 협의는 끝났는데요.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이 누구 수정의견이지요?

○은수미 위원 제 안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은수미 위원이 수정의견을 다시 낸다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는 이 역시도 아까 환경영향평가법하고 똑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소위 자료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께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다음 주 소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 주? 다음 주는 노동부만 하려고 그러는데?

○은수미 위원 이것도 절차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이완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데 왜 올려요, 지금?

○은수미 위원 이게 늦게 나와서 그러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아니, 전문위원 보고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좋은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 기본적으로 화학사고를 포함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본계획하고 세부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만드는 게 적정해요, 차관?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부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지자체가 법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주민들은 지자체가 관리를 해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에서 조례에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면 기존 법체계에서는 법체계를 혼드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보장하는 그런 제도에서……

○은수미 위원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시켜 줘요.

○소위원장 권성동 여하튼 수석전문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는데,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를 해 봤거든요, 검토의

견을. 이것을 드릴 테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69항……

○이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권성동 이석현 의원……

○이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권성동 예,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원래는 순서상 자순법 이거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이인영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셔 가지고.

○은수미 위원 이인영 위원님이 오셔야……

○이완영 위원 이인영 위원님 와야 돼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 우원식 위원님 오셔도 되는 거 아니야?

○은수미 위원 아니, 아니요. 간사가……

○이완영 위원 간사가 오셔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일단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심사를 했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뭐했다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11항부터 13항까지 대안으로 만들었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위 말하는 자생시민단체 지원하는 법률, 그것이 3건 있었는데 우선 그것만, 딱 그 내용만 있는 것 먼저 하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위원 33항.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이것은 나머지 법률까지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논의가 보류된 게 있어서……

○우원식 위원 33항만 통과시켜 버리면 되지. 대안으로 하지 말고.

○소위원장 권성동 나머지 법은 어떻게 하고?

○우원식 위원 그건 또 묶어서 하면 되고.

○소위원장 권성동 그럼 이걸 이번 달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예? 이번 달에는……

○최봉홍 위원 보류했다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보류.

○장하나 위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은수미 위원 아, 내용이 여러 가지라서.

○소위원장 권성동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은수미 위원 아, 한꺼번에 돼야 돼서.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하지 말고 떼어서 하면 되지 뭐.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다음 주에 한번 하나 까 보고 정리될 수 있는 것까지는 정리해서……

○우원식 위원 그러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보내면 되지.

○소위원장 권성동 합의되는 것만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또 이거 말고 뭐가 또 하나 있지?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또 하나 또 있어요.

○이완영 위원 나는 아까 2건뿐인 거 같은데 3건이라고 그러시네.

○우원식 위원 2건 같은데. 뭐가 3건이지?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내 기억에도 2건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자꾸 3건이라고.

○소위원장 권성동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최봉홍 위원 자연공원법이 있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자연공원법에 있고.

○소위원장 권성동 없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발견되면,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보세요.

6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6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17시18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8항, 69항 이석현 의원,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95쪽이 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서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법 30조3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가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보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하수도법의 기술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진단 미이행 악취 배출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제24조1항의 위임위탁 규정에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의 없으시지요?

○은수미 위원 예, 저는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다음번.

○수석전문위원 손총덕 1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인접해서 조성되는 신규 산업 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악취가 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미협의로 산단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애초에 반대의견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 때 한번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국토부 의견이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인접했다고 해서 지정할 것은 아니다,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해서 악취지역이 아닐 수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하면 됐지 처음부터 이렇게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할 이유는 없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법률로 끌어올린 겁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악취관리지역에 지은 산업단지, 인접하여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를 별도로 다시 검토를 안 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대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옆에 인접하면 같이 농도가 상승되는 효과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현실을 좀 반영하자 이런……

○소위원장 권성동 그건 안 돼. 그거 별도로 평가를 해서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예컨대 좀 악취가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 다시 인접 산업단지가, 예를 든다면 무슨 IT기업이라 이거야. IT기업이라서 별로 악취가 안 나는 기업이거

나 하여튼 악취가 좀 기준 이하로 나는 그런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그런 단지일 경우에도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예 인지를 하게 되면 시설을 할 텐데 그런 개념 없이 공장을 지어 놓고 봤더니 옆에 거하고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초과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안산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걸 해 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 의원입법이 제기된 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도 예컨대 A단지에는 악취가 이만큼 나고 B단지에서 배출되는 시설에서 검토를 했더니 적게 나면 이걸 합해 가지고 여기까지, 여기는 A단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 B단지까지 피해를 주는 건, 그건 좀 가혹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항이 어느 의원님이시나?

○이완영 위원 부좌현.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아니, 이석현 의원이……

○은수미 위원 것은 그대로 가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석현 의원 발의는, 이 법안만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항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면 빼고 갑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보류하는 거지요. 빼고 가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빼고 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하고 갑니다.

○이완영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권성동 다만 폐기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보류하는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

○**우원식 위원** 잠깐만요. 안산에서 지금 어떤 문제예요? 안산에서 이 문제 제기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안산지역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악취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개선을 해 갖고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공장이 다시 들어오면서, 저농도지만 악취가 나오는 공장이 입지를 하게 될 경우에 상승효과로 다시 악취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공장이 앞으로 악취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걸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하든가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우원식 위원** 그럼 필요하잖아.

○**이완영 위원** 안산은 예를 들면 필요한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조건적으로 옆에 인접하면 지정하라는 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올 때 평가를 해야지.

○**이완영 위원** IT기업, 친환경기업이 들어와도 산업단지 옆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정하니까 무리하다 이 말이지.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안산의 이 문제 제기와 이런 문제 제기를 잘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이완영 위원** 없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평가를 해야지.

○**이완영 위원** 없어요.

○**우원식 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을 못 하잖아.

○**소위원장 권성동** 또 평가해서 규제를 하면 되지요.

○**이완영 위원** 저감시설, 악취 저감시설 설치하라고 하면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건 초과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이완영 위원** 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68항만 의결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 법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머리가 아픈 법안이지만 이 두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기상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7시27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70항과 71항 김영주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0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현재는 지자체가 공공하수도 수입금을 공공하수도에만 사용해야 하나 개정안처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당초 취지인 악취 문제 해결 목적 외에 선심성 사업 등의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화조가 공공하수도 악취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자비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공공하수도 수입금이 자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공공하수도 수입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승용 의원님 안은 106쪽입니다.

동 법 목적 조항에 침수피해 예방을 추가하려는 내용인데, 하수도 기능 중에서 침수 피해 예방만 목적 조항에 추가하게 되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중요시되는 하수도 기능이 변화할 때마다 목적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뭐 묘안을 한번 좀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묘안이 없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거는 저희들 묘안이라고

보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재력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트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나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수용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저는 개인하수도도 뭐 크게 보면 공공하수도나 같은 시설로 우리가 공익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터 뚫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행자부 의견 보면 개인하수도 자립이 뭐 38%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108페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개인하수도 지원, 의무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걸 터 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완영 위원 터 줄 뿐이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 좀 여유가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는, 저희들이 수정 의견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집단에 대한 시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있으면 약취 되는 지역에 한해서 구체적 방법을 정해서 하는 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 난리날 거다.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주면 난리날 거예요, 이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사실 이런 거는 아파트단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소위원장 권성동 아파트단지도 개인하수도지, 사실은 아파트단지도.

○환경부차관 정연만 많이 되는 데가 개인 주택가보다는요……

○소위원장 권성동 다 돈을 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대규모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상가, 그런 관로들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최봉홍 위원 조례에서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국고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아니,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소위원장 권성동 지자체, 지자체 수입에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자체에 자기 돈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국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더 달라는 지자체가 일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열어 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골치 아프네. 각 동네마다 다 들고 나오면.

○소위원장 권성동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인하수도까지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최봉홍 위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구청장이 골치가 아플 거야. 이 동네 저 동네 다 들고 나오니까.

그럼 환경부에서는 수정 의견에 찬성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지자체가 약취 해결을 위해서 돈 있는 데서는 좀 다 해 주는 건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이지요, 저희들은.

○우원식 위원 할 필요가 있지.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최봉홍 위원 그러면 풀어 줍시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거든요.

○최봉홍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저기 다……

○이완영 위원 공공하수도 어느 정도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 그러면 개인하수도 해 주는 거지요.

○우원식 위원 여기 저기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을 봐 가면서 하지 뭐. 막 하나?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많거나 적다는 것은 지자체 판단이니까 그냥 제도적으로 터 주기만 하지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개인하수도 해 주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 제도가.

○우원식 위원 지자체가 다 하지도 못 해요. 돈이 있다.

○이완영 위원 사실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개인하수도 막 길어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있어요, 지자체장한테. 그러면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들일 수 있으면 들이는 거고 돈 없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은수미 위원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 우원식 위원 있지.
- 이완영 위원 예, 굉장히 우리 민원이 많아요, 지역에 있어서도.
- 은수미 위원 조례를 예를 들어서 지역을 보니까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같은 돈이어도 서민아파트일수록 부담이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 시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아마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소위원장 권성동 표와 연결되지.
- 은수미 위원 우리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떨까요?
-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지자체장들이 이것 갖고 선심성 행정을, 재정은 핑크 나도 선심성 행정 할 수 있거든. 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뭐 이런……
- 이완영 위원 그거는 지자체장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 우원식 위원 아니, 그래도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게 아무리 표가 있어도 그렇지.
- 은수미 위원 그런데 빚을 지어도 하기는 하잖아.
- 우원식 위원 예?
- 은수미 위원 빚을 지어도 하기는 하잖아요.
- 소위원장 권성동 빚을 많이 지지.
-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 최봉홍 위원 빚 안 지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하수도 요금이 워낙 싸니까, 하수도 요금이 워낙 싸요. 그런 문제도 있고.
- 소위원장 권성동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지자체만 허용하는 것으로 할까?
- 이완영 위원 안 돼, 안 돼.
- 은수미 위원 그렇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또 목메서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 그러면 김영주 의원 발의안만 수용하고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0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하고 잠깐 나가서 기다리셨다가 기상청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조금 더 하고……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우원식 위원 다음에 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하는 게 낫겠지요?

○이완영 위원 자순법 안 하고? 오늘 하지.

○은수미 위원 자순법은 간사가 오지 않으면 못 해요.

○우원식 위원 다음에 해. 나도 6시에는 나가야 돼.

○이완영 위원 밤샘 하면서 하시자면서요.

○은수미 위원 언제요? 그것은 이완영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차관님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4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8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17시37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4항·45항 그리고 81항, 최봉홍 의원·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권 310쪽이 되겠습니다.

법안 주요내용은 지난 회의 때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기상산업진흥원과 기상기술개발원 통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통합한 데 대해 다음 회의에서 기상청이 경위서를 제출하고 이를 전체회의 속기록에 남긴 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 야당 간사가 지적한 거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소위원장 권성동 경위서 제출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제출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속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경위서. 2014년 12월까지 기상청에서는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상청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기상기술개발원 등으로 분산 수행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분야별 별도 과제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상호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국회 국정감사 및 재단법인 설립·운영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 관리 및 통합운영을 위하여 2014년 11월 4일 R&D 관리체계 일원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월 9일 기상기술개발원 이사회에서 동기관의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우리 청에서는 기상기술개발원의 해산을 승인하여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상기술개발원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상기술개발원의 해산 및 연구개발 업무의 기상산업진흥원 이관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을 개정한 다음 실시하여야 할 사항이었으나 기상기술개발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와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대내외 연구개발 사업 관리·평가업무의 중단 없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연구개발 관련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일부 확보하고 있고, 2013년 1월에 기상청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서의 통합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기능과 절차에 앞서 최봉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관련법의 개정 이전에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상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정

상화 및 연구관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국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번과 같이 국회의 동의와 관련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여 사전협의 및 입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기상청장 고윤화’.

참고로 기상기술개발원은 2015년 10월 19일자로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311쪽에 있는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 기상사업 등록 결정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 문제점이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이 부분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때 검토했나요, 안 했나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검토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나는 뒤의 조문을 보니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제8조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개정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게 정부 공통사항으로 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정자산과 금치산자들이 해소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2년 동안 또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잉 금지다 해서……

○소위원장 권성동 같은 항 6호라는 것이 한정자산·금치산 그것에 해당하는 자들이구먼?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소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안심사 자료 4권 보십시오.

187쪽,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6월 1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수문기상과 가뭄 등에 대한 정부설명이

부족하여 법안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네. 정부가 왜 설명이 부족하지?

○소위원장 권성동 그때 이것 누가 지적했습니까? 누가 지적했지요?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셨나? 여야가 다 지적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여야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문기상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말 데

○소위원장 권성동 설명을 좀 했습니까? 우리 방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기상청장 고윤화 의원실에는 설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해 갑니까? 이해가요, 수문기상? 감시도 그렇고……

○은수미 위원 보좌진들한테 설명을 한 모양이 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보좌진들이 보고를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감시는 수정의견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기상청장 고윤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왜 삭제를 해?

○이완영 위원 수문기상을?

○소위원장 권성동 ‘감시’라는 용어를 삭제해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일반적으로 ‘감시’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어 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소위원장 권성동 ‘감시란 기상 관련 관측 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하니까 이상하잖아. 통상적인 의미의 감시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문기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 한번 더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한번 해 봐요.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방재기상팀장 이은정입니다.

수문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것은 기존의 강수량……

○소위원장 권성동 앞에 가까이 와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기상청에서는 주로 기상관측 요소라고 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현

상을 관측하는 거고, 수문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려서, 지금 현재 가뭄 상황과 같이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때 토양에 수분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온에 따라서 증발이 일어나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토양 수분과 증발산까지를 통합해서 땅하고 하늘과의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서 수문기상을 그런 의미로 법안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완영 위원 능력이 돼요?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예.

○이완영 위원 기상청에서 그런 능력이 되면 외국의 입법례 한번 봅시다.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수문기상은 현재……

○이완영 위원 입법례 자료를 줘 보라고, 외국의 수문.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수문기상법……

○이완영 위원 수문기상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측정을 하고 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상청장 고윤화 현재 기상관측망에 증발산량하고 토양수분에 관한 측정망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가뭄 현상을 좀 더 잘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외국에도 그렇게 하는지 조사된 게 없소?

○기상청장 고윤화 WMO에서도 하이드로미트로지(hydrometeorology)라고 해 가지고 수문기상 부분을 굉장히 큰 파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법안 심의하면 외국의 입법례는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최봉홍 위원 외국 법률에 ‘수문기상’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부분……

○이완영 위원 입법례가 됐든 어떻게 지금 그런 실제로 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외국의 가뭄 관련해서 법안이 미국에서 국가가뭄경감센터를 위해서 관련된 법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법안 안에 가뭄을 하기 위해서 수문기상을 같이 관측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뭄 감시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기상청장 고윤화** 미국의 해양대기청에서……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해양대기청에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미국뿐이에요?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미국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그리고 다른 나라, 캐나다라든지 다른 거의 대부분의 나라도 다 수문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쪽 국토부하고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우원식 위원** 여기 가뭄하고 기상학적 가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학적 가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강수량 그 자체만을 단순히 의미하고요, 수문기상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수분을 증가시키고 또 이게 하천으로 유출돼서 하천에서 증발이 되고, 이러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원식 위원** ‘가뭄 감시 및 전망’ 이렇게 하면 되지 기상학적 가뭄은……

○**기상청장 고윤화** 저희들 원래 ‘가뭄’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저쪽 국토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수문학적 가뭄 현상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상학적 가뭄으로 한정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우원식 위원** 이게 너무 어렵잖아. 가뭄 감시를 기상청이 하면 되지, 가뭄 감시는 그러면 국토부가 하고, 기상학적 가뭄은 기상청이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아닙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저희들이 기상학적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문학적 가뭄이라든지 저쪽 농업 쪽에서는 또 농업적 가뭄 이것을 다시 재판단을 합니다, 각각 용도에 따라서.

○**우원식 위원** 그게 뭐예요? 그러면 생활용수적 가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것은 사회경제학적 가뭄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게 국토부가 자기 업무영역을 조금도 침해받지 않으려고……

○**기상청장 고윤화** 예,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현상입니다.

○**우원식 위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가뭄으로 합시다, 가뭄.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기본적으로 가뭄 업무는 국토부 업무 아니에요?

○**우원식 위원** 아니, 가뭄 감시.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가뭄 관련 대책도 그렇고 국토부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우원식 위원** 가뭄에 대한 대책과 관리, 이런 것은 국토부가 하라고 그래도 가뭄에 대한 감시와 전망, 이것은 기상청에서 해야지.

○**기상청장 고윤화** 수문학적인 부분은 또 국토부의 하천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알아먹을 수 있게 써야지 무슨…… 그러면 생활용수적 가뭄은 누가 관리해요? 그것은 국토부가 합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한번 국토부에다 의견 조회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국토부 의견 조회다 끝났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거 조회해 가지고 국토부가 그 용어를 다 바꾼 거야.

○**소위원장 권성동** 뭐로요? 수문기상·가뭄으로?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학적 가뭄이라는 네 글자를 넣어 달라는 겁니다.

○**장하나 위원** 191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국토부랑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원래 가뭄 측정, 예측하는 업무는 어디 업무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다른 나라의 케이스는 NOAA라고 해 가지고 해양대기청이 있는데 그 안에 기상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요. 캐나다는 캐나

다 기상청에서 하고 있고……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지금까지 가뭄 관련 예측을 안 해 왔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전망을 하고 있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소위원장 권성동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다 굳이, 이것 없으면 못 합니까?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국토부 쪽하고 지금 현재……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 이렇게 정의 규정을 기상청의 업무로 집어넣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 법하고 관계없이 다 업무를 해 왔는데 굳이 이것을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 아프게?

○기상청장 고윤화 좀 더 명확하게 가뭄에 관한 어떤 정의라든지 역할을 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기상법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또 수문기상은 뭐예요?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돼.

○우원식 위원 국토부는 기상청도 다 갖고 싶다는 건가 봐.

○소위원장 권성동 수문기상 없이는 못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업무를 안 해 왔어요?

○최봉홍 위원 우량하고 강우량……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했어요? 수문기상 업무를……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수문기상 업무를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 올해 가뭄 같은 경우도 기상전망 자료를 발표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대국민 서비스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만 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토부랑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상청의 업무고 그다음부터는 국토부의 업무다라고 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가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국토부랑 또 다시 이게 너희 업무냐, 우리 업무냐라는 논란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국토부랑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 수문기상도 국토부하고 겹친 부분이 있어요?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아닙니다. 다 그건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토양수분과 증발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해 줍시다.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만약에 이번에 법이 통과 안 되면 또 다시 국토부하고 이 문제가 누구의 업무냐라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때문에……

○은수미 위원 그냥 해 줘요. 말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국토부 담당 국장님 오라고 해 봐요. 한번 얘기를 내가 들어보고 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뭄 대책, 관리는 그건 국토부 업무가 분명한 것 같아요. 가뭄 감시 및 전망은 누구 업무예요? 이게 부닥치는 게 있어?

○기상청장 고윤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가뭄에 대한 판단을 또 합니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부대로.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국토부에 가뭄예보센터도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기능을 하나로 딱 분명하게 해서……

○이완영 위원 국토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우원식 위원 한 군데서 이 기능을 가지면 다른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쓰면 되는 건데 이것 다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상학적 가뭄과 그냥 가뭄과 뭘 차이가 있는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의 감시 및 전망은 기상청에서 하는 게 맞지.

○기상청장 고윤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국토부가 이것은 과도한 거예요. 국토부의 기상 업무,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지 말고 기상청으로 다 보내야지.

○최봉홍 위원 지금 해수부나 국토부는 전부 기상청에서 만든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자기 것 인양 발표를 합니다.

○우원식 위원 밥 그릇 또 하나 더 만든 거지 뭐.

○최봉홍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상 가지고는…… 특히 해양 수산도 엄청나게 서로 충돌이

오지요. 오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처
간에 충돌이 있으니까……

○최봉홍 위원 수문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에는 비 오는 양, 강수량하고 저수량하고 땅에
어느 정도 물이 있느냐 거기까지만 해 가지고 했
는데 이게 과학이 더 발달이 되니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양, 일조량에 따른 증발량 그다음에 지
표 밑에 들어가 있는 지하수량 이것까지 다 보태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는 학과가 새로 생겼어요,
수문학과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상 자체를 전에는 일기
예보하고 그것만 해 왔는데 이제는 한반도 같은
한반도 위에 있는 구름이니 뭐니 양이 얼마다, 경
우에 따라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 가물
것이다, 말 것이다 전반적인, 종합적인 그런 분석
을 하기 때문에, 수문학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소위원장 권성동 여하튼 간에 국토부에 가물
예보센터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국토부 다
음……

○기상청장 고윤화 가물예보센터는 없습니다,
국토부에.

○소위원장 권성동 있다는데……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가물 뭐가 있는 거예요?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홍수통제소가 있
습니다. 가물은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홍수 통제 이런 것은 맞지. 그런
데 거기서 기상 예측을 한다거나 감시한다거나
그것은 그쪽 업무가 아니지.

○기상청장 고윤화 저희들 자료를 다 가지고 그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기상학적 가물이 아니
고 가물이지.

○은수미 위원 이것 통과시켜 주세요. 필요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좀 들어보고 합시다.

○이완영 위원 최봉홍 위원님 말씀했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해가 안 가.

○이완영 위원 기상청 자료를 해수부와 국토
부가 가져가서 기상청 자료를 내는 것은 다음에
두 개 부처 부르세요. 불러 가지고 위원장님 말
씀대로……

○소위원장 권성동 불러 가지고 확실하게 들어
보고……

○이완영 위원 아예 기상청으로 몰아주든지 그

렇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진짜.

○은수미 위원 아니, 그건 힘들걸요.

○이완영 위원 아니, 우리가 정리하면 되지.

○소위원장 권성동 해수부도 담당 국장 오라고
그리고 국토부도 담당 국장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굳이 이것 없이도 지금까지 해 왔다
고 그런다면 굳이 다른 부처 반대하는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은수미 위원 아니, 해 오지 못한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여기 법에다가 규정할 필요
가 뭐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잖아
요.

○은수미 위원 아니, 대국민 서비스는 못 했잖
아요. 결국 유관기관한테 줘서 그 기관이, 그러니
까 다른 부처가 발표하게는 하지만 기상청이 직
접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는 못 한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유관 부처한테만 자료를 주
는 그 역할만 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권성동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니 그
런 거지.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
잖아요. 부처 간에 의견 합의해서 그러면 그 부
분은 대국민 서비스로 하실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들어보고, 그 서류
좀 우리 방에 보내 주세요, 부처에서 온 의견.

○은수미 위원 통과시켜 주는 게 맞는데요, 위
원장님, 이것.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것만 확인하고 결정할
테니까……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합의 서류 가져왔
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라고 그래
가지고……

○기상청방재기상팀장 이은정 아니, 국토부……

○소위원장 권성동 자, 들어가세요.

보류하고,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 하게 되면 보류했던 자원순환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논의를 더하고 그다음에 기상청법을 하고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법 이런 순서로, 의견만 확
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순서로 할 테
니까……

○은수미 위원 유해물질 관리법도 해 주셔야지
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도 하고……

○장하나 위원 동물원법 있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권성동 자, 하여튼……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동물원법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동물원법은 안 된다니까.

○장하나 위원 시기상조라고만 하시면 어렵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산회를……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아까 의사일정 41번 이석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의설정 관련해서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의결을 해 버리셨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그 부분은 실수니까 그것은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의결한 의안들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에는 노동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권성동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이완영	이인영	이인제	장하나
최봉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	관	정	연	만
기획조정실장		백	규	석
물환경정책국장		김	영	훈
자연보전국장		이	민	호
기후대기정책관		최	홍	진
환경보건정책관		이	호	중
환경정책관		박	광	석
기상청				
청	장	고	윤	화
기획조정관		이	우	진
예보국장		양	진	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	성	균